

17. 말소등기 청구

가. 총 설

(1) 개 설

말소등기는 등기원인이 원래부터 부존재하였거나 무효인 경우(이상의 경우를 통틀어서 원인무효라 부르기도 한다), 취소·해제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또는 후발적인 실효사유(예컨대 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등)가 생긴 경우에 기존등기 전부를 등기기록상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2)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³³⁶⁾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³³⁷⁾

한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

33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337)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³³⁸⁾

그러나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유자의 1인은 단독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³³⁹⁾

(3) 청구취지 기재례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소구함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목적부동산과 말소대상이 되는 등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등기의 표시는 그 등기의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종류만으로써 족하고 그밖에 등기원인, 내용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말소등기를 실행함에는 법원의 판결자체가 등기원인으로 되기 때문이다. 다만, 후발적 실효사유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실효됨을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할 경우, 예컨대 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소멸청구에 의한 전세권·지상권의 소멸, 임대차계약 해지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설정계약 해지에 의한 근저당권의 소멸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소등기의 원인으로 기재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취지 기재례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산 39 임야 6,600㎡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12. 30. 접수 제174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에 관한 기재의 추정력

구 지적법시행령(1960.12.31. 국무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임야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이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338)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

339)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2408 판결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구 임야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특정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32900 판결)

[참조판례] 본래적 급부청구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부가하여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판결확정 후 말소등기의무가 집행불능이 된 뒤에 별도로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의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되고(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등 참조), 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판결확정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집행불능이 된 뒤에 별도로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며, 이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55411 판결)

[참조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액 및 현재의 급부청구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판결확정과 동시에 그 급부의무가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전보배상액의 산정기준시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 29474 판결 등 참조), 또 위와 같이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한 대상청구가 병합된 경우가 아니라 그 현재의 급부청구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또는 그 판결 확정과 동시에 그 급부의무가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의 전보배상액도 그 집행불능이 된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원인무효)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123-4 답 100㎡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9. 6. 7. 접수 제9614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써 무효이다.

②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7항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강행법규인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7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취득 목적대로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같은 법 소정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321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원인무효)

(원고 김순자 및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 ○○구 ○○동 309-2 전 223㎡ 중 원고 김순자에게 16분의 6 지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1972. 11. 20. 접수 제3921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원고 김순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같은 토지 중 각 1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1. 5. 2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주위적 청구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원고들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실효의 원칙의 의의

원래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비록 17년여 동안 장기간에 걸쳐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다른 상속인들이 행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무자 측의 입장에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여 실효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3162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6. 27. 접수 제11201호로 등기된 2014. 6. 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1]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아 해산되고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학교폐쇄 처분을 받아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되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관할청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되어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적용되어 관할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관할청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되어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강제경매를 포함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적용되어 관할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32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외 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2분의 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0. 1. 16. 접수 제923호로 경료한 소외 설○영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3. 2. 5. 접수 제827호로 경료한 피고 명의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1. 31. 접수 제82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88. 2.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가 패소 확정된 것과 전순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패소확정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순차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갑은 ○○지방법원 ○○등기소 1999. 5. 15. 접수 제25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피고 을은 같은 등기소 1999. 7. 15. 접수 제125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다. 피고 병은 같은 등기소 1999. 9. 15. 접수 제225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위 기재례는 원인이 없는 갑의 등기에 이어 을, 병의 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가 갑, 을, 병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를 구하는 경우의 예이다.

[참조판례] ①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 청구가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②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효력(한정무효)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의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므로,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전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후순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참조판례] 순차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공동당사자들 상호 간에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하는 것이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되는지 여부(소극)

순차로 경료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며, 이와 같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 간의 공격 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일로서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됨으로써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공유지분이전등기, 순차로 된 등기의 말소등기)

원고에게, 서울 ○○구 ○○동 산 5-96 임야 1정 3단 1무 11보에 대한 3941분지 3922중 1622지분에 관하여 (1) 피고 구○학은 1968. 6. 17.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8339호로써 경료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2) 피고 문○해는 1968. 9. 13. 위 등기소 접수 제28853호로써 경료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3) 피고 박○섭은 1969. 5. 2. 위 등기소 접수 제13367호로써 경료한 공유지분 일부 이전등기의, (4) 피고 정○철은 1969. 7. 28. 위 등기소 접수 제25301호로써 경료한 공유지분 일부 이전등기, (5) 피고 박○근은 1970. 1. 16. 위 등기소 접수 제912호로써 경료한 공유지분 일부 이전등기의, (6) 피고 김○현은 1970. 1. 28. 위 등기소 접수 제2252호로써 경료한 공유지분 일부 이전등기의, (7) 피고 노○룡은 1970. 6. 26. 위 등기소 접수 제26616호로써 경료한 공유지분 일부 이전등기의, (8) 피고 황○수는 1971. 10. 18. 위 등기소 접수 제45904호로써 경료한 공유지분 일부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승낙의사표시)

피고 학교법인 ○○학원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7. 9. 15. 접수 제20964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87. 9. 3. 접수 제20048호로 말소등기된 위 등기소 1975. 12. 29. 접수 제11693호 소유권이전청구 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

[참조판례] ① 상법 제380조가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취지

원래 상법 제380조에 규정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는 그 법적 성질이 확인의 소에 속하고 그 부존재확인판결도 확인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에 적용되는 상법 제190조의 규정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에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가 이론상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80조가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도 이를 회사법상의 소로 취급하여 그 판결에 대세적 효력을 부여하되, 주주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그 주주총회의 결의를 기초로 하여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에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여 주려는 법정책적인 판단의 결과이다.

②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의미

상법 제3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은,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한 경우처럼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판결에 상법 제190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한 경우와 같이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는 판결도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제190조를 준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데, 왜냐하면, 비록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평가할 수밖에 없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절차상의 하자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사정을 이유로 그 주주총회의 결의를 기초로 하여 발전된 사단적인 법률관계를 일거에 무너뜨리거나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가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런 경우와는 달리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상법 제39조(부실의 등기)나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또는 민법에 정하여져 있는 제3자 보호규정 등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를 개별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주식회사에게 책임을 지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2.8.18. 선고 91다3992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담장철거, 임야인도, 금전지급)

원고에게,

가. 피고 유○자는, 서울 ○○구 ○○동 산 100-3 임야 180㎡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76. 10. 12. 접수 제4096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유○자, 정○선은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9, 10, 11, 12,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임야 148㎡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에 건립된 시멘브로크조 스텝트즙 평가건 사무실 56㎡과 같은 도면표시 9, 10, 11, 12,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높이 18m, 폭 12cm의 시멘브로크조 담장을 철거하고, 위 임야 148㎡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2,331,000원 및 1980. 5. 1. 부터 위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14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특정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나, 6.25 사변 후 지적공부의 복구 재제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잘못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적공부와 달리 지번, 지적 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1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2. 22. 접수 제1849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이에 터 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지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같은 날 채무자로부터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이미 가압류채권자 명의의 적법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어 가압류결정이 공시되어 있었던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이다(대법원 1998.8.21. 선고 96다29564 판결)

[참조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 금지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북 ○○군 ○○면 ○○리 산 1 임야 37,091m²의 621분의 300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8. 3. 10. 접수 제855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권한 없이 한 처분행위를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권한 없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처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도 정당한 상속지분권자인 상속인이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제기 후 취하하였다 하여 권한 없이 한 처분행위를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2142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본소) · 가등기본등기(반소) 청구

[본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원고들에게,

- (1) 피고 김○남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8. 2. 9. ○○지방법원 ○○지원 접수 제1977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 (2) 피고 ○○산업주식회사는 별지 제2 및 3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8. 2. 23 위 같은 지원 접수 제2817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 (3) 피고 김○웅은 별지 제4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8. 3. 8 위 같은 지원 접수 제3423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 (4) 피고 박○수는 별지 제4목록 기재 제1, 2, 5, 7항 토지에 관하여는 1978. 3. 13 위 같은 지원접수 제3702호로서 경료된 같은 목록 기재 제3, 4, 6, 8 내지 15항 토지에 관하여는 1978. 3. 20 위 같은 지원접수 제4188호로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보존을 위한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 홍○혁에게,

- (1) 피고 김○남은 별지 제5목록 기재 제1 내지 4항, 제6 내지 23항 및 제25항 토지에 관하여 1978. 2. 9. 위 같은 지원 접수 제1978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 (2) 피고 ○○산업주식회사는 별지 제5목록 기재 제3, 5, 24항 토지에 관하여 1978. 2. 23. 위 같은 지원 접수 제2812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 (3) 피고 김○웅은 별지 제6목록 기재 제1 내지 3항 토지에 관하여는 1978. 3. 8. 위 같은 지원접수 제3419호로서 경료된 같은 목록 기재 제4 내지 8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78. 3. 8. 위 같은 지원접수 제3420호로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 (4) 피고 박○수는 별지 제6목록 기재 제1 내지 제4항 토지에 관하여는 1978. 3. 20. 위 같은 지원 접수 제 4188호로서 경료된, 위 같은 목록 기재 제5 내지 8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78. 3. 13. 위 같은 지원접수 제3702호로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 (5) 피고 박○호는 별지 제5목록 기재 제3항 토지 중 488분의 195지분에 관하여 1978. 4. 12 위 같은 지원접수 제5800호로서 경료된 소유지분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반소 : 가등기본등기]

1. 원고들(반소피고들, 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반소원고) 김○남으로부터 38,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김○남에게 원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9. 2. 9. 위 같은 지원 접수 제1977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2. 원고 홍○혁은 별지 제5목록 기재 제1, 2, 4항 제6 내지 23항 및 25항 토지에 관하여 1979. 2. 9 위 같은 지원접수 제1978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1965. 1. 21. 접수 제1445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박○○는
(1) 별지 제1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 4. 16. 접수 제10740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제1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 4. 16. 접수 제10739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 지]

제1 목록(부동산목록)

1. ○○시 ○○동 83-1 전 1,316㎡
2. 같은 동 54 전 294㎡
3. 같은 동 61 전 493㎡
4. 같은 동 97-1 전 456㎡끝.

제2 목록(상속지분)

1. 피고 박○○ 13분의 6
2. 피고 김○○ 13분의 2
3. 피고 박○○ 13분의 1 끝.

[참조판례] ①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 매매일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인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 또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의 매매일자가 공부상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② 위 ①항 각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 일부가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만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①항 각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는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7.11. 선고 97다 1412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말소등기, 회복등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68. 10. 14. 접수 제9302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등기소 1961. 8. 24. 접수 제4606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6. 12. 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경기 ○○군 ○면 ○○리 112 전 3,418㎡(1034평, 이 다음부터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이○치는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1995. 3. 3. 접수 제 20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이○섭은 같은 등기소 1987. 9. 28. 접수 제62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들은 같은 등기소 1987. 7. 23. 접수 제46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된 경우, 각 회복등기 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이전등기가 멸실회복으로 인한 이전등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한편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먼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 때문에 나중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되고 각 그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위 법리로는 중복등기의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 회복등기 상호 간에는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1상, 707)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로 인한)

1. 원고에게 130분의 83 지분에 관하여,
 - 가. (1) 피고 김일오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9. 12. 24. 접수 제273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2) 피고 정일면은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1. 1. 14. 접수 제7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1) 피고 김일오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 12. 24. 접수 제273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2) 피고 이일환, 박일출은, 같은 토지 중 각 70분의 15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7. 11. 16. 접수 제19553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같은 토지 중 각 70분의 20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1. 15. 접수 제816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 다. (1) 피고 김일오는 별지 목록 기재 제3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 12. 24. 접수 제273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2) 피고 주일숙은 같은 토지 중 2249분의 1320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7. 3. 26. 접수 제5944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같은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 5. 11. 접수 제9929호로 마친 전부이전등기의,

- (3) 피고 오일석은 같은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 5. 27. 접수 제115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4) 피고 백일순은 같은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0. 2. 22. 접수 제36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5) 피고 문일석은 같은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11. 7. 접수 제416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1) 피고 김일오는 별지 목록 기재 제4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 12. 24.
접수 제273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조일례는 같은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7. 10. 29. 접수 제17559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8. 6. 30. 접수 제14210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한 사례.(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공2000하, 241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원인무효, 명의신탁해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2. 10. 5. 접수 제619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2. 10. 5. 접수 제619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997. 5. 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청구 변경의 허용 범위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97다44416

판결, 공1998상, 145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3. 3. 8. 접수 제249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해 6. 9. 접수 제576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점유자가 원래 소유자를 위하여 토지를 점유한 경우 이는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신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 사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점유자가 이미 사망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였거나 신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161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원고에게,

(1) 피고 정○웅은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1988. 5. 20. 접수 제224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안○이는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88. 5. 20. 접수 제22428호로 마친 1985. 5.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채권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확정판결로 인하여 경료된 경우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그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되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확정판결로 인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 이상,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어 그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이유 없으나, 피담보채무의 변제공탁과정에서 계산상 착오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면,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615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15. 4. 29. 접수 제5663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15. 4. 29. 접수 제1763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및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이 위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바,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다1456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1. 원고에게,
 - 가. 피고 오○숙은 제주 ○○군 ○○읍 ○○리 1665 전 2,489㎡ 중 53,080/55,000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5. 7. 13. 접수 제272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피고 고○자는 제주 ○○군 ○○읍 ○○리 328-1 대 63㎡ 중 53,080/55,000 지분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92. 9. 7. 접수 제214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다. 피고 강○주는 제주 ○○군 ○○읍 ○○리 1665 전 2,489㎡ 중 53,080/55,000 지분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81. 4. 23. 접수 제174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주 ○○군 ○○읍 ○○리 328-1 대 63㎡ 중 53,080/55,000 지분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91. 7. 26. 접수 제194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원인무효, 대위에 의한)

원고에게, 경남 ○○군 ○○읍 ○○리 1191 목장용지 12,860㎡ 및 같은 리 1192 목장용지 16,595㎡에 관하여, 피고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은 ○○지방법원 1988. 4. 14. 접수 제1792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정일남은 같은 법원 1971. 12. 17. 접수 제31588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대리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재판 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원고에게, 피고 한두찬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8. 10. 2. 접수 제59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민일남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4. 11. 28. 접수 제47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정순자는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4. 15. 접수 제40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민장군은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 12. 17. 접수 제117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민장령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1. 7. 29. 접수 제17043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제1 ○○ ○○군 ○○면 ○○리 산 33-1

임야 15,669㎡

제2 위 같은 리 33-2

임야 38,515㎡

제3 위 같은 리 33-3

임야 1,353㎡. 끝.

[참조판례] 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주장, 입증방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896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증여계약취소, 채권자취소권)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1997. 3.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7. 4. 1. 접수 제3996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원고에게,

1. 충남 ○○군 ○○면 ○○리 116-2 공장용지 995㎡에 관하여,
 - 가. 정일남, 박영순, 정이남, 정일순, 정이순, 정이남, 정삼남, 정삼순, 정사남은 별지 2. 상속지분 목록 제1. 기재 각 지분(단, 피고 박영순은 1/15 지분에 한함)에 따라 ○○지방법원 ○○등기소 1965. 6. 30. 접수 제153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피고 박영희, 김순일, 김윤근, 김남순, 김미남, 김미옥은 별지 2. 상속지분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방법원 ○○등기소 1979. 3. 16. 접수 제39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다. 피고 김미남은 ○○지방법원 ○○등기소 1988. 7. 14. 접수 제129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라. 피고 주기중은 같은 등기소 1989. 12. 30. 접수 제 199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마. 피고 주식회사 보람은행은 (1) 같은 등기소 1990. 12. 28. 접수 제21563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2) 같은 등기소 1990. 12. 28. 접수 제215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3) 같은 등기소 1990. 12. 28. 접수 제215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4) 같은 등기소 1991. 8. 21. 접수 제136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충남 ○○군 ○○면 ○○리 116-3 잡종지 1,547㎡에 관하여,

가. 피고(선정당사자) 오지영, 김종화, 오미숙, 오미순, 오중일, 오순택은 별지 2. 상속지분 목록 기재에 따라 같은 등기소 1965. 6. 30. 접수 제153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오중일은 같은 등기소 1975. 8. 13. 접수 제50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김종배는 같은 등기소 1981. 4. 25. 접수 제100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피고 주기중은 같은 등기소 1981. 7. 9. 접수 제 171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마. 피고 주식회사 보람은행은 (1) 같은 등기소 1988. 12. 22. 접수 제1994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같은 등기소 1988. 12. 22. 접수 제 19948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3) 같은 등기소 1989. 5. 10. 접수 제81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4) 같은 등기소 1990. 12. 28. 접수 제215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후등기명의자의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이전의 등기명의자가 후자의 시효취득 사실을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면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 청구는 배척되어야 하는지 여부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최종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시효취득의 항변을 제출하여 법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전의 등기명의자들이 최종 등기명의자의 시효취득 사실을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3.3. 선고 94다734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원고들에게, 피고 최일남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5. 6. 7. 접수 제3536호로 마친, 피고 최일남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91. 12. 27. 접수 제1380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멸실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와 토지를 사정받은 자 또는 멸실 전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회복등기의 추정력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나, 제3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거나 또는 멸실 전 등기부상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따로 있고, 그가 양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 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말소, 확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5. 1. 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96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안○○은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5.2. 28.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5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설○○는 별지 목록 제3, 5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0.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555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박○○는 별지 목록 제3, 5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2. 11. 같은 등기소 접수 제636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마. 피고 최○○는 별지 목록 제8, 9, 10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7. 5. 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297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바. 피고 염○○은 별지 목록 제2, 4, 6, 7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9. 4. 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293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에 관하여 위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294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별지 지분표 기재비율에 따른 원고들의 공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반복되기 위한 입증의 정도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비록 그 등기명의인 이전에 다른 소유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반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반복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10.21. 선고 93다1217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1. 피고 홍○주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3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5. 3. 10. 접수 제6428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3. 11. 접수 제650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에게,
 - 가. 피고 김○구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4. 20. 접수 제107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피고 문○선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4. 6. 접수 제93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다. 피고 문○호, 문○석은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대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4. 17. 접수 제102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1.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 (1) 피고 차태원은 ○○지방법원 ○○등기소 1976. 3. 16. 접수 제 160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2) 피고 주식회사 한강은 ○○지방법원 ○○등기소 1996. 4. 22. 접수 제432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부동산에 관하여.
 - (1) 피고 차태원은 ○○지방법원 ○○등기소 1976. 3. 16. 접수 제160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2) 피고 주식회사 한강은 ○○지방법원 ○○등기소 1996. 4. 22. 접수 제432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9.22. 선고 98다2956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 가. 각 2,997분의 396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1. 5. 4. 접수 제98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각 26,973분의 792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 5. 1. 접수 제120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반복되는 경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반복된다.

②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사실의 부존재를 이유로 위 ① 항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종전 등기명의자는 명의수탁자이고 자신은 그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사실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그 취득경위에 대하여 종전의 등기명의자는 명의수탁자이고 자신은 그 명의신탁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았으나 편의상 명의수탁자인 종전 등기명의자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11.12. 선고 96다3201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 원고에게, ○○시 ○○동 18-1 도로 400㎡ 및 같은 리 18-3 답 60㎡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1972. 7. 27.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6064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시는 1973. 12. 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8821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

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비록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9.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184-2 유지 585㎡에 관하여 ○○지방법원 1979. 10. 6. 접수 제36966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용개시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유지를 조성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657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1. 원고에게, 전남 ○○군 ○○읍 ○○리 108-4 전 551㎡에 관하여,
가. 피고 한승진은 ○○지방법원 ○○지원 1969. 8. 8. 접수 제35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나. 피고 김봉환은 같은 법원 1964. 10. 23. 접수 제62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김일순, 김이순, 김일남, 김이남은 그중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64. 10. 23. 접수 제629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유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②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자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되어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실체적 권리가 있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이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어서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652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1. 원고에게

- 가. 피고 한상철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6. 9. 26. 접수 제245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피고 민대환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9. 5. 4. 접수 제1344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 다. 피고 최재원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7. 12. 21. 접수 제3772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경우, 등기명의자의 점유에 있어 과실 유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057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순차로 된 등기의 말소등기)

1. 원고에게, 서울 ○○구 ○○동 산 5-96 입야 1정 3단 1무 11보에 대한 3941분의 3922 중 1622 지분에 관하여

- (1) 피고 구○학은 20○○. 6. 17.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8339호로 마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 (2) 피고 문○해는 20○○. 9. 13. 위 등기소 접수 제28853호로 마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 (3) 피고 박○섭은 20○○. 5. 2. 위 등기소 접수 제13367호로 마친 공유지분 일부이전등기의,
- (4) 피고 정○철은 20○○. 7. 28. 위 등기소 접수 제25301호로 마친 공유지분 일부이전등기,
- (5) 피고 박○근은 20○○. 1. 16. 위 등기소 접수 제912호로 마친 공유지분 일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1.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에 관하여

(1) 피고 김선달은 ○○지방법원 ○○등기소 1987. 8. 10. 접수 제176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김선순, 같은 최일남, 같은 최이남, 같은 최삼남, 같은 최사남, 같은 최오남은 같은 등기소 1987. 8. 10. 접수 제17607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0. 12. 30. 접수 제171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김선순, 같은 최일남, 같은 최이남, 같은 최삼남, 같은 최사남, 같은 최오남은

(1) 같은 목록 기재 제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1. 3. 24. 접수 제616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2) 같은 목록 기재 제3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11. 17. 접수 제134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같은 목록 기재 제4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11. 17. 접수 제134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이의 번복을 위한 주장·입증방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 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제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밖의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② 피고들의 적극부인을 항변으로 잘못 판단하여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들의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자기들의 피상속인이 그의 소유인 토지와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을 교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볼 것이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을 제출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항변으로 봄으로써 피고들의 피상속인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는 것처럼 잘못 판단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

[참조판례] 부동산이 행정구역상 보증인들이 거주하는 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그 자연부락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 보증인들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발급권한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는 보증인의 거주지와 관련된 자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는 자를 요구하고 있고 달리 동일한 리·동 내의 자연부락에 의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부동산이 행정구역상 보증인들이 거주하는 이에 소재하고 있다면 단지 자연부락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보증인들이 위 부동산에 대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발급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5.26. 선고 92다164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종호, 김종필, 김종말은 경북 ○○군 ○○면 ○○리 산 51 임야 37,884㎡에 관하여 ○○지방법원 1971. 10. 21. 접수 제1755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김종환은 위 임야의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2. 12. 17. 접수 제260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구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구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그 추정 번복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거나 또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의 입증 정도가 법원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보증인중 1인의 보증이 허위 또는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추정력의 번복여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보증서의 보증인을 3인으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종료되는 같은 법에 의한 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데 있으므로, 보증인 중 1인의 보증내용이 허위이거나 그 보증인의 보증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면 그 보증서는 허위 내지는 위조된 보증서로서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된다.

③ 법원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 가운데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이 포함되어있는지 석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석명권 행사는 법원이 심리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불명료한 경우에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임이 분명한 경우, 법원이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7.3.11. 선고 96다4990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군 ○○면 ○○리 87 답 3,030㎡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2. 5. 18. 접수 제27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군 ○○면 ○○리 87 답 3,030㎡에 관하여 1983. 7.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한 경우, 원고가 그에 대하여 상고할 불복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때에는, 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치더라도 원고로부터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은 예비적 청구에 국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않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무의미한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그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주위적 청구부분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5.1.24. 선고 94다29065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군 ○○면 ○○리 산 123-5 임야 3,670㎡에 관하여 2012. 1. 25.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2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수인의 매매대금 미지

급이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지 여부

매매계약시 잔금 지급 이전에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여 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는 이미 이행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고, 그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특단의 사정에 대한 이유 설시가 선행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2970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 ○○군 ○○면 ○○리 산 60 임야 4,562㎡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4. 6. 25. 접수 제785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소유권지분 2/8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실종기간이 구민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었으나 그 실종이 현행 민법시행일 후에 선고된 경우 재산상속관계

법원이 현행 민법 시행일 후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실종기간이 구 민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현행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망한 것으로 볼 피상속인의 처자 등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할 것이고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 관습법에 따라 장남만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적법한 등기라고 본 사례

공동재산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을 1980.6 말경 그 상속인 중 1인으로 부터 매수하고서도, 1974.12.3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매매일자를 1973.3.15로 소급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만든 다음, 공동상속인들 전 부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한 등기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4460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원고에게, 피고 ○○북도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65. 1. 14. 접수 제1568호로써 경료한,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8,615분의 16,420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6. 11. 접수 제121호로써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①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것이 무효임을 알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한 자의

점유의 성질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안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과 자주점유로의 전환 여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점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때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농지사용목적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교육기관 등이 농지의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농지사용목적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교육기관 등은 농지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7.16. 선고 92다3787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피고 이○○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1), (2)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지원 1984. 12. 3. 접수 제16208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같은 목록 기재 (1) (2) (3)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57.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후등기의 효력유무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유무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부동산일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고 이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원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뒤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1. 원고에게,

- (1) 피고 정○천, 같은 정○하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10, 1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81. 4. 14.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9410호로, 별지 제1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9412호로, 각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2) 피고 송○수는 별지 제1, 2, 3, 4, 11, 12,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81. 8. 31. 같은등기소 접수 제31266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1987. 12. 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25123호로 경료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의,
- (3)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제1,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8. 4. 6. 같은 등기소 접수 제7097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 (4) 피고 강○훈은 별지 제5, 10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2. 2. 12. 같은 등기소 접수 제1909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 (5) 피고 최○재, 피고 최○원은 별지 제5, 10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1982. 10. 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41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6) 피고 이○배는 별지 제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0. 14. 같은 등기소 접수 제1635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7) 피고 유○종은 별지 제5, 7, 15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1. 7. 같은 등기소 접수 제1864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8) 피고 김○호는 별지 제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9. 3.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30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9) 피고 유○기, 피고 김○관은 별지 제5, 8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1989. 8. 14. 같은 등기소 접수 제1780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10) 피고 임○수는 별지 제8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 2. 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353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11) 피고 최○수는 별지 제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 5. 6.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022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12) 피고 문○자는 별지 제6, 1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2. 23. 같은 등기소 접수 제2420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13) 피고 김○신, 피고 김○철은 별지 제6, 1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1987. 12. 23. 같은 등기소 접수 제2421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14) 피고 김○덕은 별지 제7, 15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8. 9. 5.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30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15) 피고 김○순, 피고 김○례, 피고 고○곤은 별지 제7, 15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1/3지분에 관하여 1990. 9. 12.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04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16) 피고 임○자, 피고 최○일은 별지 제9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3/12, 피고 최○나, 피고 최○영, 피고 최○미는 각 2/12지분에 관하여 1987. 12. 26. 같은 등기소 접수 24604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외 망 최○형 명의의 1981. 4. 14. 같은 등기소 접수 제941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17) 피고 방○복, 피고 박○진은 별지 제9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1987. 12. 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2460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18) 피고 이○태, 피고 김○재는 별지 제9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1987. 12.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2597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19) 피고 최○열은 별지 제10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2. 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01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20) 피고 박○자는 별지 제10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7. 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1684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21) 피고 최○남은 별지 제1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 4. 14. 같은 등기소 접수 제9416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

②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도 미치는지 여부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면서 그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한 약정은 매매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임이 분명하고, 그와 같은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비록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낙하는 인낙조서가 준재심소송에서 취소되고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기판력은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다4992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원고에게,

피고 유○○, 같은 홍○○는 ○○ ○○군 ○○면 ○○리 산 7 임야 3,571㎡ 내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각 15분의 6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같은 부동산 중 각 15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9. 12. 12. 접수 제17640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이의 번복을 위한 주장 입증방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기재의 매매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피고들이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경우 이는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에 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갑이 을에게 계쟁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단순히 그 주장을 부인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계쟁토지는 본래 을이 갑에게 편의상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증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볼 것이지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725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1. 원고들에게 강원 ○○군 ○○면 ○○리 산 21-1 임야 4,661㎡에 관하여,
가. 피고 이일남은 ○○지방법원 ○○등기소 1989. 2. 9. 접수 제13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이영주는 같은 등기소 1979. 7. 16. 접수 제32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위 부동산이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비율로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등기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엇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6.28. 선고 94다 782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등기말소 및 진정등기명의회복)

1. 원고에게,

가. (1)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시는 ○○지방법원 ○○등기소 1980. 11. 10. 접수 제39108호, 1982. 7. 16. 접수 제11400호로 각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2) 같은 목록 기재 제2토지에 관하여 피고 변○수는 같은 등기소 1985. 4. 2. 접수 제985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이○군은 같은 등기소 1989. 11. 10. 접수 제2659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3) 같은 목록 기재 제3토지에 관하여 피고 변○군은 같은 등기소 1980. 3. 24. 접수 제883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새마을금고는 같은 등기소 1990. 6. 19. 접수 제18357호, 제18358호, 1992. 6. 5. 접수 제776호로 각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1990. 6. 19. 접수 제18359호로 경료한 지상권설정등기의,

(4) 같은 목록 기재 제4토지에 관하여 피고 변○군은 같은 등기소 1980. 3. 24. 접수 제883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수는 같은 등기소 1988. 3. 9. 접수 제7446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새마을금고는 같은 등기소 1992. 6. 2. 접수 제231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232호로 경료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변○수는 같은 목록 기재 제5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㉔부분 79㎡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시 ○○동 산 7 임야 185,356㎡에 관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이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별 지]

목 록 1 (피 고 들 표 시)					
순 번(소장번호)	이 름	주 소	등 기 부 상 주 소		
1	김○○(金○○)	○○시 ○○로 33(○○동)			
2	윤○○(尹○○)	○○시 ○○로59길 4(○○동)			
3	박○○(朴○○)	○○시 ○○로 153(○○동)			

목 록 2 (피 고 들 명 의 의 등 기 경 료 관 계)					
피 고 번호	등기연월일	○○지방법원 접 수 번 호	등기원인	지 분 (18정6단9무보내)	비 고
1	1971.7.31.	7928	1954.8.24. 자 매매	5무보	법률 제211호
2	1971.8.31.	7929	1954.9.24. 자 매매	1단 5무 19보	
3	1971.9.31.	7930	1954.10.24. 자 매매	1단 5무보	

[참조판례] ①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반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
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반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사실 부존재를 이유로 위 '①'항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실질적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소구하는 자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에 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
여, 같은 법에 의한 등기명의인이 단순히 그 주장을 부인하는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만 가지고는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임야에 한하는지 여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취지는 그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법 시행일인 1960. 1. 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

부터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즉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배제를 정하는 것인바, 따라서 1960. 1. 1. 전후를 막론하고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69. 6. 20.까지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그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

☐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등 청구

1. 원고 조기준, 원고 조기숙에게, 경기 ○○군 ○○면 ○○리 산 40-1 임야 212,919㎡ 및 같은 리 산 40-5 임야 25,990㎡ 중,
 - 가. 별지 도면 표시 ㉠부분 116,826㎡의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 (1) 피고 박정자, 같은 최종덕, 같은 최주화, 같은 최보화, 같은 최선화는 ○○지방법원 ○○등기소 1963. 10. 16. 접수 제9356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2) 피고 최은영, 같은 박정자, 같은 최종덕, 같은 최주화, 같은 최보화, 같은 최선화, 같은 최소영, 같은 최명일, 같은 최경영, 같은 최진영은 같은 등기소 1970. 11. 28. 접수 12205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78. 11. 2. 접수 제 13282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3) 피고 학교법인 제일○○학원은 같은 등기소 1978. 11. 2. 접수 제13283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 나. 같은 도면 표시 ㉡부분 16,165㎡의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 (1) 피고 박정자, 같은 최종덕, 같은 최주화, 같은 최보화, 같은 최선화는 ○○지방법원 ○○등기소 1963. 10. 16. 접수 제9356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2) 피고 학교법인 제일○○학원은 같은 등기소 1978. 11. 2. 접수 제13288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 다. 같은 도면 표시 ㉢부분 31,835㎡의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 (1) 피고 박정자, 같은 최종덕, 같은 최주화, 같은 최보화, 같은 최선화는 ○○지방법원 ○○등기소 1963. 10. 16. 접수 제9356호로써 한 공유지분 이전등기의,
 - (2) 피고 학교법인 제일○○학원은 같은 등기소 1978. 11. 2. 접수 제13287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 조기호에게, 경기 ○○군 ○○면 ○○리 산 40의1 임야 212,919㎡ 같은 리 산 40의5 임야 25,990㎡ 중,
 - 가. 별지 도면 표시 ㉣부분 116,826㎡의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 (1) 피고 최은영, 같은 박정자, 같은 최종덕, 같은 최주화, 같은 최보화, 같은 최선화,

같은 최소영, 같은 최명일, 같은 최경영, 같은 최진영은 ○○지방법원 ○○등기소 1962. 8. 14. 접수 제8132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등기소 1970. 11. 28. 접수

제12205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1978. 11. 2. 접수 제13282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2) 학교법인 제일○○학원은 같은 등기소 1978. 11. 2. 접수 제13283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나. 같은 도면 표시 ㉠부분 16,165㎡의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 (1) 피고 최은영, 같은 박정자, 같은 최종덕, 같은 최주화, 같은 최보화, 같은 최선화, 같은 최소영, 같은 최명일, 같은 최경영, 같은 최진영은 ○○지방법원 ○○등기소 1962. 8. 14. 접수 제8132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2) 피고 학교법인 제일○○학원은 같은 등기소 1978. 11. 2. 접수 제13288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다. 같은 도면 표시 ㉡부분 31,835㎡의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 (1) 피고 최은영, 같은 박정자, 같은 최종덕, 같은 최주화, 같은 최보화, 같은 최선화, 같은 최소영, 같은 최명일, 같은 최경영, 같은 최진영은 ○○지방법원 ○○등기소 1962. 8. 14. 접수 제8132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 (2) 피고 학교법인 제일○○학원은 같은 등기소 1978. 11. 2. 접수 제13287호로써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전 등기명의인의 처분행위에 제3자가 개입되고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이 그 제3자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든지,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는지 여부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소유명의인으로서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지, 또는 제3자가 전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26379, 2638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피고 이대우는 경북 ○○군 ○○읍 ○○리 산 566 임야 4,463㎡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2. 5. 13. 접수 제18264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이찬진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0. 5. 12.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부동산의 점유사실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전점유자가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다가 이를 현점유자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현점유자는 그 임야에서 계속적으로 소와 말의 먹이가 되는 목초를 채취하였으며, 그동안 현점유자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그 임야를 관리하거나 점유하여 온 사실이 없었다면, 현점유자는 그 임야를 매수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점유사실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②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그 처분행위의 효력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③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안에서, 그 증여행위가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안에서, 그 증여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고 수증자인 아들이 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써 아들 명의의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라고 추단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5241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말소 및 문중소유권확인)

1.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 피고 정민규, 박덕주는 각 2분의 1지분에 관한 ○○지방법원 ○○등기소 1988. 9. 24. 접수 제5201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조병호는 같은 등기소 1988. 8. 18. 접수 제43295호로 경료된 공유자 전원지분이전등기의, (3) 피고 이병순, 이두혁, 노미숙은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한 같은 등기소 1988. 6. 30. 접수 제3369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 피고 이두혁은 같은 등기소 1989. 1. 5. 접수 제54호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2) 피고 이두혁, 노미숙은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같은 등기소 1988. 6. 30. 접수 제337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 다. 별지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이병순은 같은 등기소 1988. 6. 30. 접수 제3369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 라. 별지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 피고 ○○고씨 서울문중(이하 피고 서울문중이라고 한다)은 같은 등기소 1988. 4. 7. 접수 제18561호로 경료된 이소라, 고일호, 고일주, 고일은, 고일희, 고일수, 고일구 지분전부이전등기의, (2) 피고 이소라, 고일호, 고일주, 고일은, 고일희, 고일수, 고일구는 별지 지분표 제1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한 같은 등기소 위 같은 일자 접수 제18560호로 경료된 고봉화 지분전부이전등기의, (3) 피고 서울문중은 같은 등기소 위 같은 일자 접수 제18559호로 경료된 고준영, 고은숙, 고부형, 고재형, 고재숙, 안병국, 안현수, 안현우, 안현일, 안현녀 지분 전부 이전등기의, (4) 피고 고준영, 고은숙, 고부형, 고재형, 고재숙, 안병국, 안현수, 안현우, 안현일, 안현녀는 별지 지분표 제2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한 같은 등기소 위 같은 일자 접수 제18558호로 경료된 고병준 지분전부이전등기의, (5) 피고 서울문중은 같은 등기소 위 같은 일자 접수 제18557호로 경료된 안우린, 고봉영, 고민영, 고신영, 고남준 지분전부이전등기의, (6) 피고 고봉영, 고민영, 고신영, 고남준은 별지 지분표 제3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한 같은 등기소 위 같은 일자 접수 제18556호로 경료된 고정준 지분전부이전등기의,
- 마. 피고 이소라, 고일호, 고일주, 고일은, 고일희, 고일수, 고일구, 고준영, 고은숙, 고부형, 고재형, 고재숙, 안병국, 안현수, 안현우, 안현일, 안현녀, 고봉영, 고민영, 고신영, 고남준은 별지 지분표 제1내지 3항 기재 각 지분으로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8. 25 접수 제33269호로 경료된, (2)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일자 접수 제22370호로 경료된, (3)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일자 접수 제33273호로 경료된, (4)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일자 접수 제33272호로 경료된, (5)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일자 접수 제33271호로 경료된, (6)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일자 접수 제33274호로 경료된, (7)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일자 접수 제33740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 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고씨 한양문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총유물의 보존 방법 및 종중원들이 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에 관한 타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종중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에 관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 종중원들이 총회의 결의 없이 보존행위로서 총유물에 관한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와 종중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4150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지분)

1. 원고 조○연에게,

(가) 피고 조○구, 조○수는 별지 목록 제1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79. 8.

1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0942호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조○구, 조○균은 같은 목록 제2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79. 8.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943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목록 제3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79. 8.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944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조○구는 같은 목록 제4 부동산 중 2/3지분에 관하여 1979. 10.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16346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조○천, 조○웅, 조○현은 같은 목록 제4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1991. 3. 7. 같은 등기소 접수 제3225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 조○하에게,

(가) 피고 조○구, 조○수는 같은 목록 제5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79. 8.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94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이○근, 김○성은 같은 목록 제5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89. 5. 23. 같은 등기소 접수 제8114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종중총회의 소집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중총회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그 외에 별도로 종중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약이나 종중관행이 없는 한 종중원 중 통지 가능한 모든 성년 이상의 남자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와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② 소집절차에 하자 있는 중중총회의결의를 사후의 적법한 중중총회에서 추인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중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③ 중중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중중원들의 정당한 소집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중중총회 소집방법 중중원들이 중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중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관례에 따른 중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중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중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대법원 1995.6.16. 선고 94다5356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룡은 ○○지방법원 ○○등기소 1984. 1. 12. 접수 제2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이○주는 같은 등기소 1987. 8. 21. 접수 제102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룡, 같은 김○서, 같은 김○조는 원고에게 1943년 일자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토지·건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대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1985. 4. 4. 접수 제 219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7. 2. 24. 접수 제1115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부동산 목록

제1. ○○ ○○구 ○○동 1022-44 대261.9㎡

제2. ○○ ○○구 ○○동 1022-44

[도로명주소] ○○ ○○구 ○○대로 1022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97.5㎡

2층 71.55㎡. 끝.

[참조판례] 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의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며,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권능이 없거나 매매대금 완불 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그 등기로써 결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②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나 계약이행의 청구를 선택하기 전에 상대방이 임의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인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이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의 해제나 그 이행의 청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의 운명은 관리인의 선택권 행사에 관한 재량에 따르게 되어 있고, 그 상대방은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기까지는 임의로 변제를 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위 ②항의 경우 정리회사 관리인이 상대방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고 있는 것을 소장부분의 송달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본 사례

위 ②항의 경우 정리회사 관리인이 상대방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면 관리인의 의사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선택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그 계약의 해제를 선택하는 것, 즉 소장부분의 송달로 상대방에게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3014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대로 충북 ○○군 ○○면 ○○리 678 전 1,702㎡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9. 12. 28. 접수 제16867호로 마친 소외 망 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9. 7. 6. 접수 제178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토지·건물)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전북 ○○군 ○○면 ○○리 392 종교용지 430㎡, ② 같은 리 398 임야 347㎡ 와 ③ 같은 리 397 및 392 양 필지 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대웅전 11.49㎡, 목조 기와지붕 단층 삼○각 1.81㎡, 목조 기와지붕 단층 요사 34.78㎡, 목조 기와지붕 단층 중○각 2.11㎡, 목조 스투지붕 단층 변소 3.2㎡ 및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 영○각 12.1㎡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2. 1. 30. 접수 제124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해

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4773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변근수는 경북 ○○군 ○○면 ○○리 산 53 임야 15,463㎡ 및 같은 리 산 56 임야 25,920㎡ 중 각 95분의 80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1. 12. 12. 접수 제3973호로 경료한, 피고 박 ○○, 정○○, 강○○, 주식회사 ○○건설, 김○○, 최○○, 성○○, 이○○, 허○○, 남○○, 윤○○, 송○○, 유○○, 오○○은 위 같은 리 산 41-1 임야 58,909㎡ 중 별지 목록 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지원 2011. 2. 19. 접수 같은 목록 기재의 접수번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변근수는 336,842,104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경북 ○○군 ○○면 ○○리 산 60 임야 39,174㎡와 경북 ○○군 ○○면 ○○리 1071 전 1824㎡ 및 같은 리 1071-2 전 491㎡ 중 각 1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1. 4. 24. 접수 2011. 2. 7. 재상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170,9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매매계약체결 후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매수인들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에 속하는 임야를 매수하였음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이 위 임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적어도 매수인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잠탈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때로부터는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고, 이에 터 잡은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이 없게 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②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과 신의칙 강행법규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7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

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서 이를 배척한다면, 투기 거래계약의 효력발생을 금지하려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과 취득 목적대로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3.12.24. 선고 93다44319, 44326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청구

원고에게, 피고 조○임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3. 12. 30. 접수 제64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2. 6. 접수 제71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배○택, 김○연, 배○찬, 배○낙은 별지 목록 기재 3번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3. 14. 접수 제162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배○기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2. 17. 접수 제106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농업협동조합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3. 13. 접수 제151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최○○은 ○○시 ○○동 764 전 2,54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9. 8. 16. 접수 제249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이○○은 같은 토지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72. 10. 2. 접수 제147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최○○은 원고들에게 ○○시 ○○동 764 전 2,545㎡에 관하여 별지 지분표기제 비율에 따라 1990. 1.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토지 7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쟁토지에 관하여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토지가 매매목적물인 7필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하고 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넘어간 뒤에도 계속 매도인측이 자기 소유물처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도인측 주장과 같이 착오에 의해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토지 7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쟁토지에 관하여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토지가 매매목적물인 7필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하고 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넘어간 뒤에도 계속 매도인측이 자기 소유물처럼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매수인측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사연 또는 그 토지를 달리 매수 취득한 경로를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측 주장과 같이 착오에 의해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680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원고에게,

- (1) 피고 박일창, 같은 최일진, 같은 박일영, 같은 박일원, 같은 박이원, 같은 박삼원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소외 박일만의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67. 9. 5. 접수 제2214호로서 마친 위 박일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1984. 3. 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8005호로서 마친 위 피고들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 (2) 피고 이일수, 같은 김일순, 같은 이일순, 같은 이일숙, 같은 이일영, 같은 이일자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소외 이일현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7. 9. 5. 접수 제2214호로서 마친 위 이일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등기소 1984. 3. 27. 접수 제8006호로서 마친 위 피고들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 (3) 피고 박일창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4. 3. 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8007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3. 2. 10. 접수 제266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지상 세멘 벽돌조 기와지붕 가건물 1동 30㎡를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 지]

목 록

1. 경기 ○○군 ○○면 ○○리 226-1 전 383㎡
2. 위 같은 리 226-2 임야 681㎡

[참조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매도자 아닌 그 전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보증서나 확인서에 터잡았다 해도 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갑 소유의 부동산이 장남인 을에게 증여되고 병은 위 을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에 의하여 병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비록 을이 아닌 갑으로부터 병이 직접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보증서나 확인서에 터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수 없다.(대법원 1991.10.22. 선고 91다2645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이전등기·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1. 원고에게 피고 김장원은 충남 ○○군 ○○면 ○○리 산 193-3 임야 38,678㎡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1. 6. 1. 접수 제154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백○유, 김장원, 김○옥, 김○정, 김○화, 김○인, 김○보, 김○오는 위 부동산 중 별지 1목록 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지원 1970. 10. 15. 접수 제658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이거나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998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군 ○○읍 ○○리 192-5 종교용지 331㎡ 및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기와집 평가건 종교시설 건평 66.26㎡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1986. 7. 25. 접수 제5692호로써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불교 신도회가 조직을 갖추고 회장을 중심으로 법회 및 포교 활동해 왔다면 사찰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라고 본 사례

불교신도들이 모여 법회 등을 열어 오다가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함과 동시에 그 규약에 따라 소집된 신도회에서 회장과 부회장 및 그 외의 운영위원들을 선출하여 조직을 갖추고 그 때부터 회장을 중심으로 법회 및 포교활동을 해 왔다면 이 신도회는 사찰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라고 본 사례.

② 위 ①항의 경우 그 신도들이 사찰 아닌 위 신도회에 한 시주금에 의하여 대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위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

사찰의 불교신도가 하는 보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찰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이 돈으로 취득하거나 건축한 토지나 그 지상의 종교시설은 당해 사찰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신도회가 사찰과 별개로 독립하여 활동해 오던 단체이고 그 신도들이 사찰 아닌 위 신도회에 한 시주금에 의하여 대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 부동산은 사찰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③ 위 ①항의 신도회가 위 ②항의 부동산을 주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음에도 위 주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사찰에게 증여한 경우 이 증여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위 ①항의 신도회가 위 ②항의 부동산을 사찰의 주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뜻이 담긴 소장부분을 송달하였는데, 위 사찰의 주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그 자신이 주지로 있는 위 사찰에게 이를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주지와 사찰간의 증여는 사실상 동일인에 의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1.10.22. 선고 91다26072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청구(종중, 명의신탁해지, 대위에 의한)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군 ○○면 ○○리 산 141 입야 20,430㎡에 관하여 1991. 6.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소외 김○○에게 위 ○○리 1662 전 635㎡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1. 8. 31. 접수 제283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2729 판결)

[참조판례] 종중의 의미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봉행,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반드시 특별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999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1610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3분지 19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산업 주식회사는 ○○지방법원 1983. 6. 10. 접수 제1116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김○○, 김○○은 같은 법원 1987. 8. 19. 접수 22405호로 마친, 피고 박○○은 같은 법원 1987. 8. 19. 접수 22406호로 마친, 피고 주식회사 ○○은 같은 법원 1988. 1. 8. 접수 26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의 지분 일부만 원인무효인 경우, 말소를 명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집행방법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의 지분 일부만 원인무효일 경우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고, 다만 그 판결의 집행은 지분말소등기의 방법이 아니라 잔존지분권자와 말소를 명한 지분의 진정한 권리자와의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따름이다.(대법원 1995.5.9. 선고 94다3840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가. 피고 박○○은

(1) 제1, 2, 3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65. 4. 8. 접수 제9428호로써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2) 제4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7. 9. 7. 접수 제 6124호로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3) 제5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5. 6. 30. 접수 제 20645호로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4) 제6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59. 12. 30. 접수 제1270호로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농업협동조합은 제6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3. 3. 11. 접수 제2712호로써, 위 같은 날 접수 제7822호로써, 1990. 5. 29. 접수 제5047호로써 각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피고 김○○은 제7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8. 5. 11. 접수 제1695호로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한○○은 제8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 4. 2. 접수 제 2336호로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별 지]

목 록

1. ○○시 ○○동 463-1 전 2,249m²
2. ○○시 ○○동 463-2 전 152m²
3. ○○시 ○○동 463-5 전 1,903m²
4. ○○시 ○○동 463-9 전 279m²(279분의 206 박○○ 지분)
5. ○○시 ○○동 464-1 도로 215m²
6. ○○시 ○○동 510 전 205m²
- 이상, 피고 박○○에 대한 부분
7. ○○시 ○○동 355 답 774m²
- 이상, 피고 김○○에 대한 부분
8. ○○시 ○○동 산 65 임야 6,446m²
- 이상, 피고 한○○에 대한 부분. 끝.

[참조판례]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 등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3.11. 선고 93다5749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등기말소, 등기이전)

원고에게, 피고 박송수는 대전 ○○구 ○○동 78-20 임야 28.7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4959분의 453.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7. 12. 11. 접수 제4907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9. 12. 20. 접수 제7113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박송 역은 이 사건 임야 중 4959분의 4505.5 지분에 관하여 1980.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제자리환지의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처분권한 유무

종전토지와 전연 다른 곳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는 이른바 전지환지(비환지)의 경우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은 있어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나, 제자리환지의 경우에는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종결되기 이전이라도 그 예정지에 대하여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종전 그대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자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167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협의취득)

원고에게, 피고 윤○홍은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6. 11. 26. 접수 제75050호로써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1974. 3. 8.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중복등기)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황○○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88. 9. 24. 접수 제326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문○○은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326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한씨○○공과중증은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 5. 1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후등기의 효력유무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유무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부동산일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고 이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원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뒤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판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25116 판결)
 [참조판례]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대법원 1988.3.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등기말소 및 공유확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박○○는 ○○지방법원 ○○등기소 1985. 4. 22. 접수 제823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 나. 피고 안○○는 같은 등기소 1986. 7. 18. 접수 제59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이 별지 지분표 기재 비율에 따라 원고들의 공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진정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다5840 판결)

[참조판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할 것인지 여부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1. 원고에게,
 - 가. 피고 정○○는 별지 목록 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5. 6. 28. 접수 제6976호로 마친, 같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 2. 8. 접수 제87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3.12.13. 접수 제1105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 나. 피고 강○○는 위 5.항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7. 12. 22. 접수 제176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다. 피고 이○○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12. 29. 접수 제190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라. 피고 천○○은 위 3., 6.항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0. 4. 20. 접수 제342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상속등기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公示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유확인, 합유지분 이전등기말소등기)

1. 충남 ○○군 ○○면 ○○리 125-3 답 2,525㎡ 및 같은 리 125-4 답 1,50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피고 김○○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2분의 1 합유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4. 6. 27. 접수 제64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최○○, 강○○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2분의 1 합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3. 9. 6. 접수 제97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지처분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그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종전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환지처분 후 종전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다3300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말소등기, 합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1. 피고 김동수, 같은 김봉호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4. 5. 9. 접수 제3438호로 마친 1/4지분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김종육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0. 9. 15. 접수 제17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0. 9. 15. 접수 제24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김일만은 원고 및 피고 김봉호, 같은 김종육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80. 5. 5. 합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4인 합유로 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중 1인이 등기명의인에게 위 합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4인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합유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어서 합유자 전원이 합유적으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사이에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약정으로 합유지분을 갖게 될 어느 한 사람이 그 스스로의 지위와 다른 합유자 2인을 대위한 지위에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적격을 흠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남부지원 1985.5.23. 선고 84가합

1530 판결)

[참조판례] 합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요적 공동소송)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합유자 중 일부의 청구인낙이나 합유자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원고에게, 경남 ○○군 ○○읍 ○○리 45-2 대 370㎡에 대한 63분의 41지분에 관하여, 피고 차○○은 ○○지방법원 ○○지원 1981. 8. 24. 접수 제2515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 등기의, 피고 남○○는 같은 법원 1988. 8. 18. 접수 제95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박○○는 같은 법원 1989. 5. 30. 접수 제70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1942.5.29. 당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시행 당시인 1942.5.29. 토지대장에 소유권이 전등록이 되어 있다면 당시 이미 그 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의미한다(대법원 1993.2.26. 선고 92다308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등기말소, 소유권확인)

원고 배○○에게 충북 ○○군 ○○면 ○○리 산 21-7 임야 2,380㎡에 대한 3/9지분에 관하여, 원고 송○○일, 송○○이, 송○○삼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각 2/9지분에 관하여, (1) 피고 박○○영자는 ○○지방법원 ○○등기소 1980. 12. 10 접수 제22672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2) 피고 안○○은 위 같은 등기소 1989. 11. 3. 접수 제1525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부동산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되어 있는데 그 토지의 지적공부가 현재 관할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보존등기 당시에는 그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②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중복등기가 되어 있어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선등기의 등기명의자는 그 선등기가 유효함을 이유로 후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시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나, 다, 스, 오, 자, 차, 카, 테, 프, 마, 바, ㄱ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다, 라 부분 472㎡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89. 1. 13. 접수 제8028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시는 원고에게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21,635,4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요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2항은 제1항과는 달리 ‘취득한 토지 전부’가 공공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라도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장차 공공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제1항의 경우보다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가중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이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필요한 토지를 취득한 사업시 행자의 입장에서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될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취득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나 해당 토지의 필지별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하므로, 환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물론 환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취득된 토지 등이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과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4669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무효의 등기말소, 부당이득금지급)

원고에게, (1) 피고 박이남은 서울 ○○구 ○○동 175 전 850㎡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1. 4. 7. 접수 제851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박이남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12. 27. 접수 제10062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같은 동 177-1 전 843㎡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 1. 23. 접수 제250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박이남은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여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 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061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강산업은 ○○지방법원 ○○등기소 1991. 1. 7. 접수 제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동강공업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청구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유성룡은 ○○지방법원 ○○등기소 1965. 5. 18. 접수 제7174호로 경료된, 피고 양정숙은 같은 등기소 1979. 4. 18. 접수 제16922호로 경료된, 피고 권돌석은 같은 등기소 1983. 6. 15. 접수 제21521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기재 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유성룡은 같은 등기소 1965. 5. 18. 접수 제6809호로 경료된, 피고 양정숙은 같은 등기소 1979. 7. 6. 접수 제29004호로 경료된, 피고 권돌석은 같은 등기소 1983. 6. 15. 접수 제21521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별지 목록 기재 4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양정숙은 ○○지방법원 ○○등기소 1979. 3. 22. 접수 제12303호로 경료된, 피고 권돌석은 같은 등기소 1983. 6. 15. 접수 제21521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별지 목록 기재 5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공사는 ○○지방법원 ○○등기소 1987. 12. 15. 접수 제12072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등기기간만을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이 전점유자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경우에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만을 주장할 것인지, 또는 전점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까지 아울러 주장할 것인지는 같은 법조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선택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만으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의 당사자가 한 그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전점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3.12.14. 선고 93다4336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지분)

원고에게 피고 강성복은 ○○ ○○읍 ○○리 132-4 답 50㎡ 중 6/23지분에 관하여, 피고 주일남, 주일순, 주이순, 주삼순은 같은 토지 중 각 4/23지분에 관하여, 피고 주사순은 같은 토지 중 1/23지분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1977. 8. 31. 접수 제559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말소등기의 승낙의사표시, 이전등기)

1. 원고에게,
 - 가. 피고 이○○은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1. 5. 접수 제12300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나. 피고 김○○은 전항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승낙하고,
 - 다. 피고 박○○은 위 토지에 관하여, 1999.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1. 주위적 청구

원고에게, 피고 유대철은 부산 ○○구 ○○동 산 43 임야 12,556㎡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2. 26. 접수 제18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주식회사 ○○산업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5. 12. 접수 제34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 유대철은 원고에게 540,1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추가 및 예비적 청구원인 보충서 송달 다음 날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토지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한 아파트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약정된 아파트 매매대금 또는 피담보채무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아파트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매수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나 담보목적의 가등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피담보채무 또는 전세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곧바로 그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매도인이 제3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수인이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을 각 경료하였더라도 그 후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등기 자체가 말소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 또는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지분)

원고에게, (1) 피고 지○○은 ○○시 ○○동 595-11 대 101㎡ 중 250분의 14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7. 4. 1. 접수 제7805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 위 토지 중 250분의 97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84. 5. 17. 접수 제9774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유○○은 위 토지 중 250분의 142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85. 8. 9. 접수 제15305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양○○은 위 토지 중 250분의 239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87. 5. 29. 접수 제11957호로 마친 지분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등기소 1988. 10. 28. 접수 제30224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필한 후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양수인이 그 양수부분을 초과한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1.5.10. 선고 90다2003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지분)

원고에게, 피고 우○○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토지 중 각 1,781분의 800지분에 관하여 각 1985. 4. 4.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9965호로 마쳐진 소유권일부 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기재 제2토지 중 1,781분의 981지분에 관하여 1988. 6. 2. 같은 등기소 접수 제45996호로 마쳐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농업협동조합은 같은 목록 기재 제2토지에 관하여, 1988. 9. 6. 같은 등기소 접수 제76797호와 제76798호 및 1988. 10. 25. 같은 등기소 접수 제92734호로 각 마쳐진 근저당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65-1 대 264.5㎡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7㎡(11.2평)에 관하여 1982. 2. 25.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5442호로 경료된 1981. 12. 1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전공유자에 의한 공유물분할계약에 위배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방법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계쟁토지에 관하여는 전공유자 사이에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 임의로 이를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공유자전원을 상대로 공유물분할계약의 해제로 인한 말소소송을 구할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만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경료된 등기부분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서울고법 1984.12.5. 선고 84나47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주위적으로 환매, 예비적으로 우선매수권확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부산 ○○구 ○○동 144-16 대 2,129㎡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1993. 12.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의 우선매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광역시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3. 10. 28. 접수 제44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의 취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원고들에게 ○○시 ○○동 123 임야 12정 7단 6무에 관한 소외 망 김상일의 소유지분 1/3중 피고 김동일, 같은 김동이는 각 3/12에 관하여, 피고 김장군, 같은 김동식, 같은 김일남은 각 2/12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78. 12. 20. 접수 제9310호로 경료한 위 김상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건물지분)

1.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3층 258.25㎡에 대한 2/5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4. 7. 5. 접수 제4459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47,770,000원 및 이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9.부터, 나머지 29,7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4.부터 각 2016. 3. 25.자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동산인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1981. 2. 21. 접수 제12342호로, 별지 제3 내지 6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1981. 7. 28. 접수 제324588호로 각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1 내지 6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기계기구 및 공작물 목록, 건축물 목록, 악기류 목록 및 자동차 목록에 기재된 각 기자재를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지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이일남에 대하여는 11분지 3에 대하여, 원고 이인국에 대하여는 11분지 2에 대하여
 - 가) 피고 박○○은 ○○지방법원 ○○등기소 1999. 4. 7. 접수 제12345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피고 최○○은 위 등기소 1999. 7. 7. 접수 제34567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다) 피고 주○○은 위 등기소 1999. 10. 7. 접수 제56789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1. 원고들에게, 서울 ○○구 ○○동 551-4 대 664.6㎡에 대한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 이보화는 ○○지방법원 ○○등기소 1986. 9. 12. 접수 제19130호로 경료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나. 피고 최민수는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9129호로 경료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다. 피고 ○○시는 피고 최민수 명의로 1983.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등기말소, 취득시효)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군 ○○면 ○○리 663-8 대 192㎡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7. 7. 7. 접수 제3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군 ○○면 ○○리 663-8 대 192㎡에 관하여 1988.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예비적 병합, 양여, 소유권확인, 부동산인도)

(주위적 청구취지)

1. 원고에게,
 -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982. 3. 3. ○○지방법원 접수 제2964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같은 법원 접수 제2963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 나. 피고 ○○도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 12. 4. 같은 법원 접수 제24091호로 경료한 1986. 11. 11. 양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 다. 피고 ○○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8. 3. 11. 같은 법원 접수 제6104호로 경료한 1988. 1. 30. 양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 예비적 청구취지)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도는 1986. 12. 4. 같은 법원 접수 제24901호로 경료한 1986. 11. 11.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시는 1988. 3. 11. 같은 법원 접수 제6104호로 경료한 1988. 1. 30.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별지 도면 표시 ㉠, ③, ④,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 ③, ④,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4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82. 3. 3. 접수 제2964호로 경료한,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45㎡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2. 3. 3. 접수 제2963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도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위 43㎡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중 위 245㎡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6. 12. 4. 접수 제24901호로 경료한 1986. 11. 11. 양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시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위 43㎡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중 위 245㎡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8. 3. 11. 접수 제6104호로 경료한 1988. 1. 30. 양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위 43㎡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중 위 245㎡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3. 피고 ○○시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위 43㎡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중 위 245㎡를 인도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하천법에 의하여 폐천부지를 우선 양여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순서에 반하여 폐천부지를 양여받은 후순위자에게 양여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국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하천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건설부장관이 폐천부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위 규정에 의한 순위와 기준에 따라 이를 양여하게 되는 경우 폐천부지를 우선적으로 양여받을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도 양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위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우선순위자가 폐천부지의 소유자인 국가에 대하여 폐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또 우선순위를 위반하여 국가로부터 폐천부지를 양여받아 등기를 경료한 후순위자에게 그 양여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6.11. 92다4250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이○○는 ○○지방법원 ○○등기소 1989. 1. 21. 접수 제2062호로 마친 1989. 1. 2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위 등기소 1989. 12. 29. 접수 제54790호로 마친 1989. 3. 20.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천○○는 위 등기소 1990. 4. 24. 접수 제17877호로 마친 1990. 4. 3.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2879 판결)

[참조판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산 40-4 임야 2,678㎡ 및 위 같은 동 산 40-5 임야 3,150㎡ 중 3150분의 250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1979. 12. 22 접수 제199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1982. 6. 10 접수 제88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와 함께 채소전화해를 한 후 그 채소전화해에 따라 가등

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 여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일정시기까지 채무금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가등기에 기한본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의 채소전 화해를 하였다가 채무자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아 그 채소전화해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채소전화해의 효력

채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③ 채소전화해조항에 채무의 변제기와 채무원금만 정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지연손해금의 비율

채소전화해조항에 채무의 변제기와 채무원금만 정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2852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김미자, 변종근에 대한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미자, 변종근은 피고 합자회사 한강건설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10. 15. 접수 제355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9. 24. 접수 제636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김미자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김미자는 원고에게 22,695,390원 및 이에 대한 2008. 6. 24.부터 위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한순자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한순자는 피고 김미자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1. 19. 접수 제965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합자회사 한강건설에 대한 청구취지

같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145,890원 및 이에 대한 2005. 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건설회사가 이자 약정하에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아파트로 일부변제에 충당하고 채무액을 새로 정하여 정산합의를 한 경우에 있어 잔존채무와 종전채무와의 관계나 잔존채무의 지연손해금에 종전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를 설시하지도 않은 채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건설회사가 갑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금 1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원리금의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갑으로 하여금 4세대분의 아파트를 임의로 타인에게 처분하여 위 채무원리금에 충당하도록 하고, 갑이 부담하게 될 위 아파트 등에 대한 제 세금과 은행융자금에 대한 이자 등을 합한 채무원리금 변제에 충당하고도 남는 채무액은 이를 금 40,000,000원으로 하여 정산합의를 한 경우에 있어 건설회사가 갑으로부터 위 금 120,000,000원을 차용할 때 이자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위 정산합의에 의한 잔존채무가 종전의 채무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밝히지도 아니하고 또 위 잔존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종전의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를 명백히 설시하지도 않은 채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② 위 ①항의 경우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잔존채무에 대한 정산약정은 상사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2.7.28. 선고 92다10173, 1018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금전지급과 상환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정동남은 원고들로부터 216,8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9.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진용섭은
 - 가. 피고 정동남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9. 9. 25. 접수 제 26567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정동남은 원고들로부터 216,8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 1, 2, 5,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 11. 2. 접수 제21972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되는 것이지만, 매수인이 그와 같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1368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예비적 병합,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금전지급)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는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 29. 접수 제1358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9. 5. 10. 접수 제9875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유○○는 같은 등기소 2009. 12. 4. 접수 제24536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509,807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10.부터 이 사건 2012. 11. 2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조서 작성 이후에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 5350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보존등기,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에게, 피고 김○○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74.7.20. 접수 제946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같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79. 2. 24. 접수 제7483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같은 목록 기재 제4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71. 12. 11. 접수 제15507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한○○는 같은 목록 기재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7. 7. 8. 접수 제1603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정○○은 같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6. 4. 16. 접수 제909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청구원인이 피고가 망인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계쟁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내세워 이미 사망한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위소송에서 얻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임야 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매수에 관한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등이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2799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강은행은 서울 ○○구 ○○동 3가 51-3 대 79㎡, 같은 동 3가 51-5 대 67㎡ 및 위 양 지상 철근연와조 아연즙 2층 창고 1층 40.66㎡, 2층 40.66㎡에 관하여 ○○지방법원 1973. 3. 24. 접수 제1553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박소희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77. 6. 16. 접수 제2428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박대경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77. 6. 16. 접수 제249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명동은행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77. 7. 28. 접수 제3622호 및 1978. 11. 15. 접수 제7310호로서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마. 피고 한강상호신용금고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79. 10. 2. 접수 제4923호, 1979. 10. 8. 접수 제4241호 및 1979. 10. 12. 접수 제4733호로서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1. 원고에게, 피고 유○○, 홍○○는 경기 ○○군 ○○면 ○○리 산 7 임야 3,571㎡ 내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각 15분의 6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같은 부동산 중 각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12. 12. 접수 제176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가. 피고 김상국은 전지 4분의 3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1982. 3. 26. 접수 제172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김종일은 전지 4261분의 331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2. 5. 7. 접수 제138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같은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8. 2. 10. 접수 제68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박일근은 피고 김종일의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8. 5. 4. 접수 제217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같은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9. 6. 2. 접수 제223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에게, 피고 송미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8. 7. 22. 접수 제94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같은 목록 기재 제1. 내지 제3.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3. 6. 28. 접수 제63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한승원, 같은 이판금은 같은 목록 기재 제1. 내지 제3.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3. 7. 22. 접수 제77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음에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고 그에 따라 가등기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가등기 후 매수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직접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매매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원리금을 변제함으로써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가등기가 그대로 남아있음을 이용하여 가등기 명의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고 나아가 타인 명의로 가등기까지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의 소멸 후의 위 담보가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 및 타인 명의의 가등기도 원인무효이며, 나아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한 가등기 후의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역시 원인무효이어서 위 제3자는 여전히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으므로, 위 제3자로서는 위 말소등기의 회복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직접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원인무효인 위 각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공무원이 다시 직권으로 말소된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

기를 할 수 있고, 위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말소되었다 하여 이미 목적 달성으로 소멸한 전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다시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에게는 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각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29097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매매계약취소)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 (1) 피고 김○철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6. 4. 30. 접수 제5284호로써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 (2) 피고 신○례는 별지 목록 기재 제5 내지 7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날 접수 제5277호로써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 (3) 피고 김○순는 별지 목록 기재 제 8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날 접수 제5282호로써 경료된, 별지 목록 기재 제 9부동산중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날 접수 제5279호로써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 (4) 피고 김○수는 별지 목록 기재 제9 부동산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날 접수 제5278호로써 경료된, 별지목록기재 제10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날 접수 제5280호로써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 (5) 피고 김○대는 별지 목록 기재 제 11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날 접수 제5281호로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 (6) 피고 김○협은 별지 목록 기재 제 1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날 접수 제5283호로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과 소외 망 김○희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 4. 24. 체결한 각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예비적 병합,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선이행)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군 ○○면 ○○리 143 전 8,112㎡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9. 11. 13. 접수 제68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2. 1. 11. 접수 제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또는 선택적으로 소외 정○○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통지를 받을 자의 범위 및 그 흠결의 효과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36162 판결)

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기본형)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군 ○○읍 ○○리 468 전 559㎡에 관하여 ○○지방법원 1965. 6. 17. 접수 제21607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5.6.30.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20년 후에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그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계쟁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친척을 관리자로 하여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원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제3자의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5.6.30. 실효)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전후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가 20년 가까이 경과하여서야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제3자의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을 믿기 어렵다거나 보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는지 기억이 없고 매도증서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등기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보증서나 확인서의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11.15. 선고 96다31024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원고에게, 피고 이○○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7. 4. 29. 접수 제3181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노○○은 같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8. 3. 접수 제1693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6. 18. 접수 제1320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윤○○은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7. 28. 접수 제1634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않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유무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은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42852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1. 원고에게, ○○ ○○군 ○○리 산 82 임야 108,595㎡에 관하여,
가. 피고 최○○, 같은 백○○, 같은 백○○, 같은 백○○, 같은 백○○, 같은 백○○,
같은 백○○은 각 별지 목록 기재 지분별로 ○○지방법원 ○○등기소 1970. 12.
31. 접수 제15949호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8. 7. 8. 접수
제876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전○○은 같은 등기소 1988. 7. 8. 접수 제876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그 번복방법과 주장 입증책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50192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지분)

-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구 ○○동 123-9 임야 2,009㎡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1971. 12. 17. 접수 제3738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7다24900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피고는 소외 홍○○[620420-1234567,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12길 3(서초동)]에게 ○○ ○○군 ○○면 ○○리 산 31 임야 9단 2무보에 관하여 ○○지방법원 1970. 11. 25. 접수 제2646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추정력이 복멸되는 경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 비록 그 등기명의인 이전에 다른 소유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

② 같은 법에 따라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보증인은 갑의 매수사실 등 그 권리이전경위를 알지 못한 채 '갑이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갑이 주장하는 소유권 취득경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

같은 법에 따라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보증인은 갑 또는 갑의 부의 매수사실이나 그 권리이전경위를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이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갑은 임야의 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분묘이장시 도움을 주었다 하여 그대가로 임야 전체를 증여하고 자신의 부가 위 관리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자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관계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갑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21923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말소등기, 취득시효완성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2. 5. 16. 접수 제3406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1989. 11. 27. 접수 제11471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기재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1. 4. 20. 접수 제4224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 중 원고 이○우에게 34/75 지분, 원고 이○순에게 6/75 지분, 원고 이○숙에게 11/75 지분, 원고 이○원에게 24/75 지분에 관하여 각 1978. 9.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경정등기에 대한 지분등기말소)

강원 ○○읍 ○○리 232 전 860㎡ 중 원고 김용호에게는 38/45 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일선에게는 7/4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김일진은 ○○지방법원 ○○등기소 1992. 1. 9. 접수 제15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들은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주등기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5. 4. 10. 접수 제2090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에 대하여 피고 김일진, 김일용 각 108/504 지분, 피고 김일자 27/504 지분, 피고 김이자 51/504 지분, 피고 김삼자 54/504 지분, 피고 양일자, 김일석 각 39/504 지분, 피고 김일희, 김이희, 김삼희 각 26/504 지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경정의 부기등기가 무효인 경우 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지분만을 말소하기 위하여 잔존 지분권자와 말소를 구하는 진정한 권리자와의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소유권보존등기 경정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경정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550-3 철도용지 476㎡, 같은 동 550-8 철도용지 486㎡(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3. 4. 4. 접수 제2432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토지에 대한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정등기 전의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원래 지적의 일부만을 표상하는 것으로의 지적경정은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적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위 법리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정등기 전의 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40975 판결)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1. 원고에게,

가. 피고 박○○는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대한 40/44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8. 10. 5. 접수 제44839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같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정일남, 피고 오영순은 각 6/44지분에 관하여, 피고 정일순, 정이순은 각 1/44지분에 관하여, 피고 정삼순, 정이남은 각 4/44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법원 1988. 8. 20. 접수 제36776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같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 중, 정일남, 피고 오영순은 각 6/44지분에 관하여, 피고 정일순, 정이순은 각 1/44지분에 관하여, 피고 정삼순, 정이남은 각 4/44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법원 1981. 8. 28. 접수 제38526호로써 경료한 소외 정한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라. 피고 ○○정씨 ○○종중은 같은 목록 4, 6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1/6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법원 1988. 10. 11. 접수 제45371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 피고 송철순은 같은 목록 7 기재 부동산에 대한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8. 6. 3. 접수 제23583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바. 정일남, 피고 오영순, 정일순, 정이순, 정삼순, 정이남은,

(1) 같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외 정한길 소유 지분중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70. 12. 31. 접수 제8472호로써 경료한,

(2) 같은 목록 5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외 정한길 소유 지분중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70. 9. 24. 접수 제5086호로써 경료한,

(3) 같은 목록 6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외 정한길 소유 지분중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5091호로써 경료한,

(4) 같은 목록 7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외 정한길 소유 지분중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5092호로써 경료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사. 같은 목록 8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정동숙은 1/4지분에 관하여, 정일남, 피고 오영순, 정일순, 정이순, 정삼순, 정이남은 1/4지분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1971. 3. 31. 접수 제1237호로써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원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 기재의 효력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된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동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5383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원고에게 경북 ○○군 ○○면 ○○리 328 전 6,116㎡에 대한 피고 진일근은 17분의 6지분에 관하여, 피고 진일식은 17분의 4지분에 관하여, 피고 문일자, 같은 진일숙, 같은 진일영은 각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진일숙은 17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5. 4. 11. 접수 제7013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그 멸실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추정력을 인정한 사례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전전매도된 끝에 원고의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어 있었으나 6.25사변으로 그에 관한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며 그 후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자 란이 소유자 미복구로 비어 있었고, 그 등기부는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위 사정명의인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1.9.13. 선고 91다21237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주위적 청구취지)

1. 원고들에게

- 가. 피고 김○○, 정○○은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8. 4. 25. 접수 제12144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 나. 피고 허○○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4. 25. 접수 제121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다. 피고 ○○군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 5. 9. 접수 제71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라.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1. 3. 12. 접수 제238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 마. 피고 장○○은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7. 29. 접수 제102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바. 피고 조○○, 최○○, 민○○, 손○○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 5. 9. 접수 제71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별지 지분표기재 각 지분비율에 따른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지분표기재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 1936. 10. 21.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대정15.4.5. 제령 7호)에 따라 임야를 양여받았으나 1965.12.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대정 15.4.5. 제령 7호)에 따라 임야를 양여받은 경우, 위 양여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 아니라 일종의 증여이므로, 양수인이나 상속인이 1965.12.31.까지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1993.6.25. 선고 92다14458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시 ○○동 산 38 임야 2단 8무보(임야대장상 1983㎡)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73. 2. 8. 접수 제245호로 마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법원 1957. 6. 29. 접수 제1483호로 마친 회복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소멸시효의 주장과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자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

② 원고가 병, 을, 갑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을의 갑에 대한, 또 병의 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갑이 그 소유 임야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병에게, 병은 원고에게 각 증여하였는데 위 임야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자 정이 근거없이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회복등기를 경료한 후 사망하여 피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가 병, 을, 갑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는 을의 갑에 대한, 또 병의 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1.7.26. 선고 91다5631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 ○○군 ○○읍 ○○리 1797 임야 2,929㎡에 관하여 ○○지방법원 1985. 2. 19. 접수 제646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반복되는 경우 및 그 입증의 정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한 등기는 같은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반복시킬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거가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반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738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원고에게, 피고 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67. 10. 18. 접수 제258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유○○은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4. 2. 24. 접수 제25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최○○, 피고 임○○은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4. 3. 14. 접수 제37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 및 계속 여부의 판단 기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는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상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

②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의 대상 및 무과실의 입증책임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

③ 매도인에게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그 부동산 점유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여부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원고들에게, 피고 한○○은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7. 12. 8. 접수 제23940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윤○○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11. 30. 접수 제3734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㉔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청구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는 별지 목록 제1, 2, 3기재의 각 토지의 13분지 12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1. 3. 30. 접수 제9715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조○○는 같은 목록 제1, 2기재의 각 토지의 13분지 12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1983. 4. 20. 접수 제9226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정○○는 같은 목록 제1, 2기재의 각 토지의 13분지 12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1986. 7. 18. 접수 제13353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김○○은 같은 목록 제3기재의 토지의 13분지 12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1981. 8. 25. 접수 제614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에 의한 공유자 명단이 기재되어 있고 재결결과가 관보에 공시된 경우 사정의 효력 유무 임야대장에 갇이 사정받은 것으로 된 사정의 기재와 갇외 12인이 소유자로 된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에 의하여 소유자로 확정된 갇외 12인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야대장상 갇 앞으로 된 사정은 그 뒤에 있는 재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㉕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동시확인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5. 6. 18. 접수 제482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같은 목록 2, 3, 4.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74. 8. 20. 접수 제10067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위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지적법에 따라 복구된 소유자 명의를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지적법과 같은법시행령 등의 소정절차에 따라 임야에 대한 소유신고를하여 임야대장에 피고의 조부 소유명의로 복구되고 이어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로 피고로 변경된 다음, 이를 근거로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경료되었다면 그 등기의 효력으로 피고는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으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등기의 무효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② 위토 또는 묘산(중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종중소유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계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특정 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 또는 묘산(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중중의 소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4.10.7. 선고 94다28048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중복보존등기, 압류등기)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서울 ○○구 ○○동 12-3 대 300㎡ 및 위 같은 동 12-4 대 400㎡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1. 20. 접수 제10101호로서 마친 등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99. 5. 20. 접수 제1234호로서 경료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관계의 요지]

위 부동산은 소외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소외 B, 피고 등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오다가 원고가 최종 소유자로 되었다. 그런데 등기공무원이 신등기부로 이기하면서 부동산 표제부상의 표기를 착오 기재하여 동일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보존등기가 되었다. 한편, ○○세무서장은 피고에 대한 국세채권으로 대위 보존등기 방법으로 등기부 용지를 달리하여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를 2중으로 경료하고 권리자 피고 국으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말소 및 지분소유권확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 ○○군 ○○면 ○○리 산 50 전 1,190㎡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2. 2. 11. 접수 제2454호로써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 중 385분의 63지분이 원고 양○○의, 위 토지 중 385분의 138지분이 원고 양○○의, 위 토지 중 385분의 46지분이 원고 노○○, 양○○, 양○○, 양○○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국가가 임야대장에 사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되는지 여부

국가가 임야대장에 사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그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 위 공고기간 동안에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무주의 부동산이 아니라 사정명 의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인 이상, 국가가 무주의 부동산을 국가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절차규정에 불과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서울고법 1991.4.16. 선고 90나57712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소유권확인, 등기말소)

1. 별지 제1목록 (1)기재 부동산 중 622/2182지분 및 (2) 내지 (4), (6), (11) 내지 (16), (18), (20), (22), (23)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 가) 피고 김근일은 같은 목록 (1)기재 부동산 중 622/2182지분 및 (2) 내지 (4), (6)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1. 4. 14. 접수 제8707호로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같은 이부영은 같은 목록 (1)기재 부동산 중 622/2182지분에 관하여 위 지원 1984. 1. 13. 접수 제815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2)내지 (4), (6)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같은 날 접수 제814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 다) 같은 이경주는 같은 목록 (11)내지 (13), (15), (18), (22), (23)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78. 12. 22. 접수 제24193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 라) 같은 김호봉은 같은 목록 (1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77. 4. 14. 접수 제391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 마) 같은 김봉수는 같은 목록 (1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84. 5. 30. 접수 제15193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 바) 같은 정춘섭은 같은 목록 (1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83. 3. 14. 접수 제6186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 사) 같은 신병석은 같은 목록 (18)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79. 12. 24. 접수 제2274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 아) 같은 남일남은 같은 목록 (20)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82. 10. 12. 접수 제23007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 자) 같은 이재숙은 같은 목록 (2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79. 12. 24. 접수 제22746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 유무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

②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말소, 확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2. 21. 접수 제1010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64. 12. 31. 접수 제695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같은 목록 기재 제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0. 12. 11. 접수 제864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상속에 의한 점유승계시 점유태양의 승계 여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피상속인이 점유하여 관리·경작하던 토지를 상속받은 자가 매수 사실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점유해 온 사안에서, 그 토지에 대하여 종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점, 피상속인을 수호인으로 한 위토인허가 된 경위, 피상속인이 그 토지를 경작하여 그 소출로 제수를 마련하여 시제를 모셔온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더 심리함이 없이 피상속인의 점유 및 이를 승계한 상속인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원고에게, 경남 ○○군 ○○면 ○○리 258-1 전 5,058㎡에 관하여, 피고 김○○는 ○○지방법원 ○○등기소 1993. 7. 6. 접수 제29022호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정○○은 같은 등기소 1993. 8. 14. 접수 제3523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경우,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 및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원고에게,

피고 조○○은 경기 ○○군 ○○면 ○○리 1200 답 6,684㎡(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56,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를 위 같은 곳 1200-1 답 3,382㎡(같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56, 57, 58, 59, 60, 6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㉔부분)와 위 같은 곳 1200-2 답 3,302㎡(같은 도면 표시 2, 61, 60, 59, 58, 57, 56,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㉔부분)으로 분할한 위 같은 곳 1200-1 답 3,382㎡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6. 7. 15. 접수 제15337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방○○은 위 분할에 동의하고 위 같은 곳 1200-1 답 3,382㎡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86. 9. 8. 접수 제1857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멸실 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효력관계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로 보아야 하며 이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라도 그 해석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② 위 ① 항에서 먼저 이루어진 등기인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위 ①항의 경우 먼저 이루어진 등기인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측에게 있다.

③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사유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되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0159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3. 12. 13. 접수 제11188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제2, 4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56. 6. 29. 접수 제328호로 경료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65. 6. 28. 접수 제1006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56. 6. 29. 접수 제329호로 경료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65. 6. 28. 접수 제1006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소유권확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농지개량조합은 ○○지방법원 ○○등기소 1973. 8. 3. 접수 제505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등기소 1983. 6. 29. 접수 제441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목록 제3기재 토지(이하 '제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등기소 1983. 6. 29. 접수 제441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군은 위 등기소 1984. 11. 28. 접수 제78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4 기재 토지(이하 '제4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김○순은 위 등기소 1986. 10. 7. 접수 제949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김○철은 위 등기소 1988. 2. 15. 접수 제18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5 기재 토지(이하 '제5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농지개량조합은 위 등기소 1981. 9. 22. 접수 제577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목록 제6 기재 토지(이하 '제6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농지개량조합은 위 등기소 1964. 12. 28. 접수 제307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목록 제7 기재 토지(이하 '제7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등기소 1979. 4. 23. 접수 제30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제1, 2, 3, 4, 7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의 우열관계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②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특별연고자에게 양여된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

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의 추정력 유무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실효)에 의한 양여 당시 국유이던 토지에 관하여 그 이후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이미 복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제3자로서는 전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승계취득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 내용 및 그 정도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구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11184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1. 원고에게,

(1) 피고 윤일병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1990. 11. 22. 접수 제31775호로 마친, 피고 윤이병은 같은 목록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0. 11. 22. 접수 제31775호로 마친, 피고 박일원은 같은 목록 3. 4.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0. 11. 9. 접수 제30463호로 마친, 피고 이일형은 같은 목록 5.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2. 12. 9. 접수 제31956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2) 같은 목록 5.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진흥공사는 같은 등기소 1995. 9. 1. 접수 제262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5. 12. 23. 접수 제400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하일봉은 같은 등기소 1995. 12. 23. 접수 제400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 362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제 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② 갑이 토지의 소유자 자격으로 농지개혁법에 따른 보상신청을 하였고 그에게 지가증권이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이 토지의 소유자 자격으로 농지개혁법에 따라 보상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그에게 지가증권이 발급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0036 판결)

라.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기본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8. 5. 15. 접수 제21283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보람은행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3. 7. 30. 접수 제72778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소 1994. 1. 28. 접수 제5695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동화은행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소 1994. 8. 16. 접수 제55863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②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子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친권자와 그 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해지³⁴⁰)를 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8. 4. 12. 접수 제156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999. 9. 18.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³⁴¹⁾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동시이행)

피고는 원고로부터 1,926,03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시 ○○동 465-10지상 시멘트 블록조 슬래트지붕 단층주택 82.08㎡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8. 9. 28. 접수 제251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잔존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에는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340) 등기원인이 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고 그 실효원인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말소등기의 원인으로 기재한다.

341)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 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포함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잔존 피담보채권이 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수량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5249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2. 1. 9. 접수 제318호로, 같은 등기소 1992. 9. 14. 접수 제21803호로,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180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처가 승낙 없이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별도의 기본대리권이 있는 처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데다가 그 인감증명서가 본인인 남편이 발급 받은 것이고, 남편이 스스로 처에게 인감을 보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문서와 남편의 무인이 찍힌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는 등 남편이 처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믿게 할 특별한 사정까지 있었다면, 그 상대방으로서는 처가 남편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② 처가 승낙 없이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그 정산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가 그 후 합의가 결렬된 경우, 무권대리의 추인을 인정한 사례

처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처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아파트와 토지를 처가 금전을 차용한 자에게 이전하고 그 토지의 시가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가 결렬되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처가 차용한 사채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남편은 처의 근저당권 설정 및 금원 차용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5098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청구(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말소)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구 ○○동 417-3 대 293.5㎡ 및 같은 동 417-4 대 297.2㎡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0. 3. 24. 접수, 제6065호로 경료된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6066호로 경료된 각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공동저당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 위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이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 토지와 공동담보로 주채무자 소유 토지에 1번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이와 별도로 주채무자 소유 토지에 2번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먼저 주채무자의 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대금에서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넘는 금액이 배당된 경우에는,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36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후순위(2번)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1번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동시이행)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시 ○○동 465(○로 465)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테트지붕 단층주택 82.08㎡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8. 9. 28. 접수 제251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잔존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수량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에는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잔존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수량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5249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9. 7. 11. 접수 제37006호로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0. 5. 1. 접수 제22009호로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16338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1. 6. 10. 접수 제36636호, 제36637호, 제36638호, 제36639호, 제36640호, 36641호, 36642호, 3664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지분)

1. 경북 ○○군 ○○면 ○○리 102-6 전 12,073㎡ 중 전소유권의 12073분의 5954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안○○는 피고 이찬수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1991. 4. 22. 접수 제 9691 내지 9705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이찬수는 원고에게 같은 등기소 같은 해 3. 23. 접수 제7074호 내지 7088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대리권 수여 여부를 본인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함이 없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31842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원고승계참가인 승계참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5. 10. 24. 접수 제69245호로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채무를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자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위의 부기등기에 관한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수인일 때 그중 일부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변제로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게 될 경우에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면 채무를 변제한 뒤에 그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들이 채무를 변제한 뒤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들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10305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11,23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말소를 구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표시

○○지방법원 ○○지원 1994. 5. 10. 접수 제38404호로 경료된, 채무자 박○○, 근저당권자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6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부동산의 표시

1. ○○시 ○○동 5527 대 93.5㎡

2. ○○시 ○○동 5527

[도로명주소] ○○시 ○○로 55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층 단층 점포

64.9㎡, 지층 21.63㎡, 옥탑 4.9㎡

[참조판례] 제3자의 기망에 의한 사기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기행위를 한 자가 의사표시의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기행위를 한 자를 민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설사 상대방이 사기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바, 직접 대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아니하나 대출 등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권한을 가진 상호신용금고 직원이 고객의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을 기망하여 상호신용금고와 대출약정을 체결케 하고 고객명의로 대출금을 타에 유용·편취한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는 기망행위를 한 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제3자의 기망에 의한 사기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지법 1995. 12. 8. 선고 94가합102217 판결 : 항소)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설정계약해제)

원고에게, (1) 피고 장근무, 김소영, 김선영은 별지 1.부동산 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3. 2. 25. 접수 제4053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 피고 김선영, 주영철, 이복순은 별지 1.부동산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3. 1. 13. 접수 제3617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설정계약해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5. 3. 22. 접수 제6706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기왕의 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근저당권설정자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 당시에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와의 사이에 철강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채권자 회사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기왕의 채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채무액에 관하여 문의하지 아니하였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계약의 의미에 관하여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 등에 확인하였으며, 또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 채권자 회사는 지점장이나 대표이사 그 누구도 참석한 사실이 없다면, 근저당권설정자가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근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며, 또한 채권자 회사의 직원이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채무자의 채권자 회사에 대한 기왕의 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7612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0. 9. 4. 접수 제53177호 경료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각 부동산과 별지 제3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91. 4. 4. 접수 제17203호로 경료한 근저당권변경등기 및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91. 12. 5. 접수 제69919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청구(설정등기말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말소)

피고 ○○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대전 ○○구 ○○동 310-16 전 351㎡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0. 4. 19. 접수 제260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박○○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0. 4. 14. 접수 제24869호로 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부기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24870호로 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소유명의자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또는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동명이인을 상대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

부동산등기부상 당사자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는 소유명의자 자신의 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인이 그 표시의 잘못을 이유로 스스로 경정을 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등기의무자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그 경정등기에 잘못이 있다면 다시 경정 등기를 하는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비록 우연히 그와 같은 경정된 이름의 별도의 사람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등기는 여전히 종전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명의인인 원고와 동명이인인 피고가 신청착오 또는 전거를 원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또는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위 각 부기등기에 대한 주등기의무자는 원고 자신이고 피고는 위 부기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가 아닐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표시경정이나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권리의 축소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부기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대선지법 1991.12.27. 선고 91가단15123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황○동은 ○○지방법원 ○○등기소 1995. 12. 18. 접수 제57752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같은 등기소 1988. 3. 11. 접수 제9812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기금은 같은 등기소 1991. 11. 28. 접수 제58500호로 경료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및 1997. 11. 21. 접수 제56529호, 제56530호로 각 경료한 각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고○차, 강○정은 같은 등기소 1992. 11. 28. 접수 제55685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포장공업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1995. 11. 3. 접수 제50232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1995. 11. 27. 접수 제54080호로 경료한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한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②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나 교사로 사용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관할 교육구청장의 확인을 얻는 등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에, 스스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사립학교 경영자가 단순히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사립학교의 교지나 교사로 사용되는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을 알면서도 관할 교육구청장의 확인을 얻는 형식을 갖추는 등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사립학교의 교지 및 교사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그 금원을 자신이 경영하는 여러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징역형이 확정됨으로써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관할 교육구청장의 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될 여지가 있는 등 계속하여 사립학교를 경영케 하는 것이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사립학교 경영자가 스스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의 위반을 이유로 사립학교의 교지 및 교사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함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서울지법 서부지원 1999. 2. 12. 선고 98가합11840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3. 3. 16. 접수 제21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같은 날자 접수 제2174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피담보채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된다는 관계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② 근저당권의 확정시기(=경매신청시) 및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실제로 하지는 않고 다만 경매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인 데 그친 경우 근저당권이 확정되는지 여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실제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경매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인 데 그친 것이라면 이로써 근저당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48567 판결)

[참조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기등기도 직권 말소되는지 여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대법원 1995.5.26. 선고 95다7550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군 ○○면 ○○리 산 43-1 임야 16066㎡ 중 4959/1606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8. 3. 16. 접수 제63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저당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물권적 합의를 요하는 당사자의 범위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 때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양수
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3975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1. 별지 부동산 목록 중,
 - 가. 피고 정만복, 정상주, 김동래, 조봉려는 원고 정남일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3. 10. 29. 접수 제53001호로 마친,
 - 나. 피고 양순희는 원고 정남수에게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3. 10. 29. 접수 제53044호로 마친, 원고 정별주에게 제9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3. 10. 29. 접수 제53045호로 마친,
 - 다. 피고 정상주, 김동래, 김무순은 원고 안통원에게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3. 10. 29. 접수 제53002호로 마친,
 - 라. 피고 염정란, 한영희는 원고 안전형에게 제4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3. 11. 2. 접수 제53610호로 마친, 원고 최대식에게 제10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3. 10. 30. 접수 제53253호로 마친,
 - 마. 피고 엄현순, 남정주는 원고 육정호에게 제5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3. 11. 1. 접수 제53336호로 마친,
 - 바. 피고 길종섭은 원고 연천만에게 제6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3. 11. 1. 접수 제53337호로 마친,
 - 사. 피고 임종순은 원고 노주영에게 제7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3. 10. 27. 접수 제52519호로 마친,
 - 아. 피고 윤홍식은 원고 김형식에게 제8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3. 11. 1. 접수 제5333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본소) · 대여금(반소) 청구

(본 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지원 2009. 1. 24. 접수 제2930호 및 같은 지원 2010. 12. 4. 접수 제67821호로 각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반 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32,48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금전대차 거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51265, 51272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청구(근저당권설정계약, 매매계약 취소)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이○수와 소외 엄○일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0. 8.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0. 8. 20. 체결된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 9.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나. 피고 ○○산업주식회사와 소외 엄○일 사이에,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0. 9. 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소외 엄○일에게,

가. 피고 이○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0. 8. 8. 접수 제10169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1. 1. 22. 접수 제609호로 경료된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1. 9. 25. 접수 제12441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산업주식회사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0. 9. 11. 접수 제6561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청구(예비적 병합, 금전지급 부분 중첩관계)

주위적 청구취지

1. 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근저당권설정등기 토지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1은 원고 2에게 별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 건물목록 2항 기재, 원고 3에게 같은 목록 3항 기재, 원고 8에게 같은 목록 8항 기재, 원고 9에게 같은 목록 9항 기재, 원고 10에게 같은 목록 10항 기재, 원고 13에게 같은 목록 13항 기재, 원고 14에게 같은 목록 14항 기재, 원고 15에게 같은 목록 15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피고 2는 원고 1에게 같은 목록 1항 기재, 원고 6에게 같은 목록 6항 기재, 원고 11에게 같은 목록 1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라. 피고 3은 원고 4에게 같은 목록 4항 기재, 원고 7에게 같은 목록 7항 기재, 원고 12에게 같은 목록 12항 기재, 원고 16에게 같은 목록 16 내지 19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마. 피고 4는 원고 5에게 같은 목록 5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 청구취지

1. 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피고 ○○유통 주식회사에게 별지 1 근저당권설정등기 토지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유통 주식회사에게,
 - 1) 피고 1은 별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 건물목록 2항, 3항, 8항 내지 10항, 13항 내지 15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2) 피고 2는 같은 목록 1항, 6항, 1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3) 피고 3은 같은 목록 4항, 7항, 12항, 16항 내지 19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4) 피고 4는 같은 목록 5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유통 주식회사, 피고 6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13.부터 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확장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는데 그 후 건물이 완성된 경우, 등기의 효력(유효) 및 이러한 법리는 1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고 이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진 다음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1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고 이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진 다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도 견고하게 부착되는 등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9876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청구(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예비적 병합, 채무초과부존재)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구 ○○동 516-1 대 251㎡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0. 3. 24. 접수 제5770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11,091,6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마. 가등기말소

㊦ 가등기말소 청구(기본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88. 9. 30. 접수 제5693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매매대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전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조건적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매매대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전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조건적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와 함께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다.

②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인영 부분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증을 들어 진정성립의 추정을 꾀할 수 있는지 여부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인영 부분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증을 들어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면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진다.

③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민사재판에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물론이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증거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30129, 30136 판결)

㊦ 가등기말소 청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시 ○○동 663-1 답 6,317㎡ 중 1911분의 963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부지원 1981. 10. 29. 접수 제270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위 같은 지원 1994. 5. 23. 접수 제215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농지 매매 당시 관할 관청의 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농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경우, 증명 흠결의 하자 치유 여부

농지 매매 당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농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로 되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의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고, 농지 매수인은 소재지 관서의 증명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②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이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체결된 경우, 관할 관청의 거래허가의 필요 여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 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하여 그 원인행 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4.12. 선고 96다6431 판결)

㊦ 가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86. 10. 6. 접수 제45729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45730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45732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인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전, 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일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전소판결이 확정된 후 후소로써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위 '①'항의 경우에 해당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나 판결이유 중에 실시되었을 뿐인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만일 후소로써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면 이는 1물1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전소에서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고 그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은 경우에 해당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소에서 판단의 전제가 되었을 뿐이고 그로써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3.24. 선고 93다52488 판결)

㊦ 가등기말소등 청구(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3. 12. 8. 접수 제40530호로 경료한 가등기 및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1. 6. 19. 접수 제25252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가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적 한계(=정산절차 종료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6.22. 선고 93다7334 판결)

☐ 가등기말소 청구(동시이행)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 . . . 접수 제987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가등기말소등 청구(예비적 병합,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3. 1. 20. 접수 제56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4. 4. 3. 접수 제2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7,1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3. 1. 20. 접수 제56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4. 4. 3. 접수 제2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채무자의 채무변제로 인하여 제3자에의 이행이 불능에 이르러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배상액도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게 됨에 따라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특약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할 경우 위 계약금 상당의 배상액은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상당한 비용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고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시한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조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의 실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목적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남부지원 1984.12.21 선고 84가합1002 판결 : 항소)

㊟ 가등기말소등 청구(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에게, (1) 피고 김○○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87. 2. 5. 접수 제46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각 가등기 및 같은 법원 1987. 11. 24. 접수, 같은 목록 제1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47791호, 같은 목록 제2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47802호, 같은 목록 제3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47807호, 같은 목록 제4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47818호, 같은 목록 제5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4781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권○○은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7. 12. 2. 접수 제496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각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합리적인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② 가등기 및 본등기가 재산의 도피 또는 은닉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가등기 및 본등기가 재산의 도피 또는 은닉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0.10.30. 선고 89다카34572 판결)

㊟ 가등기말소등 청구(대위에 의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피고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 [100000-200000,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12길 3(서초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4. 8. 7. 접수 제3921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같은 지원 같은 해 12. 28. 접수 제6721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회사영업이 전부 또는 일부 양도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양수자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0308 판결)

㊦ 가등기말소등 청구(금원지급 부분 중첩관계)

1. 피고 황일남은 원고 김일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1. 4. 1. 접수 제11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황일남과 피고 황이남은 공동하여 원고 김삼용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8.부터 2012. 9. 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가등기말소등 청구(가등기 및 부기등기말소)

원고에게, 광주 ○○구 ○○동 산 26-4 입야 19,077㎡에 관하여, 주식회사 ○○건설은 ○○지방법원 ○○등기소 1983. 11. 7. 접수 제1833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피고, 김○○, 박○○, 박○○, 박○○는 같은 등기소 1991. 5. 8. 접수 제10071호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② 가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기등기도 직권말소되는지 여부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③ 법적 관점 지적의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등기와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발생 여부에 대한 쟁점에 관하여만 심리가 되어 제1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고, 원심에서 역시 피고적격이나 가등기부기등기의 말소방법에 관한 석명이나 변론이 없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각하 판결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적격 등의 문제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원고로 하여금 이 점에

관하여 변론을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점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소를 각하한 것은 원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예상 외의 재판으로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4.10.21. 선고 94다17109 판결)

㊦ 가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80. 10. 30. 접수 제528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함에 있어 착오로 그 표현이 잘못되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한 사례

부동산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으로서 매수인의 계약이행의 일환으로 마쳐진 매수인 명의의 가등기말소의무와 매도인의 계약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건물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으나 여기에서 건물명도청구란 등기말소청구의 착오임이 명백한 경우 법원이 이 동시이행의 항변에 따라 계약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다.

② 계약금이 물취조항에 의하여 물취되었다는 권리멸각사유에 관한 주장책임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계약사항을 불이행시에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약하여도 이의할 수 없고 납부한 계약금을 매도인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물취되었다는 권리멸각사유는 매도인에게 그 주장책임이 있다.(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9412 판결)

㊦ 가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1. ○○시 ○○동 산 12 임야 145686㎡ 중 44070분의 250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1(생년월일 생략)과 피고 1 사이에 2016. 1. 1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1은 소외 1에게 ○○지방법원 2004. 3. 16. 접수 제21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법원 2016. 2. 5. 접수 제161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시 ○○동 산 34 임야 6615㎡에 관하여,
가. 소외 1(생년월일 생략)과 피고 2 사이에 2015. 9. 1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2는 소외 1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4. 3. 16. 접수 제11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등기소 2015. 9. 16. 접수 제563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지 않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다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일도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보아야 한다.

[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를 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사해행위 여부나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를 한 행위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별개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이고, 이때 본등기의 원인인 새로운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나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 가등기말소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 . . . ○○지방법원 ○○지원 접수 제12345호로써 한 199 . . . 자 매매에 인한 위 지원 199 . . . 자 가등기가처분명령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대하여 피고 박○○은 2/13, 피고 홍○○은 6/13, 피고 홍○○, 같은 주○○은 각 1/3, 피고 홍○○은 3/13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가등기말소 청구(가등기가처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67. 4. 19. 접수 제9878호로서 같은 법원 1967. 4. 19.자 가등기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기입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7. 4. 21. 접수 제10179호로서 같은 법원 1967. 4. 21.자 가등기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기입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바. 지상권설정등기말소

㉠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지상권이전등기,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원고에게, 피고 오○○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87. 12. 7. ○○지방법원 ○○지원 접수 제7580호 및 1989. 2. 28. 같은 지원 접수 제1585호로 마친 각 지상권이전등기의, 피고 허○○는 같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72. 3. 21. 같은 지원 접수 제844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면 재소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소송물이 동일한 외에 권리보호의 이익도 동일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전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사항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위 약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지상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와 전소가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같지 아니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위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주무장관의 허가 없는 사찰재산의 처분행위를 추인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불교재산관리법(1987.11.28. 법률 제3974호로 폐지) 제11조 제1항 소정의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찰재산의 처분행위는 사찰의 추인 여부에 불구하고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22074 판결)

㉡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군 ○○면 ○○리 산 50 임야 93,223㎡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5. 12. 26. 접수 제7804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법원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을 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송당사자가 지상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명백히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일응의 입증을 하고 있다면 원심이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승계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② 입목에 대한 벌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벌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지상권마저 소멸하는지 여부와 지상권의 양도성

입목에 대한 벌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할지라도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벌채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지상권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이 없이 그 자체로서 양도될 수 있으며 그 양도성은 민법 제282조, 제289조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대법원 1991.11.8. 선고 90다15716 판결)

☐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소외 ○○사에게, 피고 홍○○, 피고 오○○은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임야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72. 3. 21. 접수 제843호로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피고 이○○은 별지 제4목록 기재 임야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72. 3. 21. 접수 제843호로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입목을 매수하여 그 명인방법을 갖춘 자의 임야사용권과 임야에 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

임야상에 식재된 송입목을 매수하여 그 명인방법을 갖춘 자는 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송입목을 벌채할 때까지 임야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명인방법 실시이후에 위 임야에 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서울고법 1989. 2. 22. 선고 88나33553 판결)

☐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 청구

1. 원고는 피고에게,

-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73. 8. 30. 접수 제1212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2) 33,605,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가 없고,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참조). 나아가,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양수인은 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건물의 전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나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다18319 판결)

사. 전세권설정등기말소

㊦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기본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1. 5. 25. 접수 제25014호로 경료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②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③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의 합의로 전세권 등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채권담보를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채권자가 그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와 담보권명의자인 제3자 사이에 담보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그 담보권명의자는 그 피담보채권을 수령하고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담보계약상의 권한을 가진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4. 1. 15. 접수 제925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에 기한 전세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1. 19. 접수 제13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및 제3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비록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제3자 사이에 실제로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되거나 전세금이 수수된 바 없다거나,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자는 임차인이고 제3자는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②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자에게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가사 위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명의신탁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규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하지 않은 경우, 그 전세권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전세권 명의신탁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

☐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 11. 27. 접수 제19329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같은 등기소 20○4. 12. 1. 접수 제10078호로 마친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담보의 목적 등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선의인 이상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2]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가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 갑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사안

에서, 갑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승낙의 의사표시)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시멘트제조 주식회사는,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3층 내지 17층 각 702.27㎡ 및 3511.35㎡ 사무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1993. 12. 28. 접수 제100325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층 702.27㎡ 사무실 전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4. 7. 접수 제24416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9층 702.27㎡ 북쪽 538.06㎡ 및 11층 702.27㎡ 전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6. 22. 접수 제43608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1) 피고 ○○투자금융 주식회사는 위 1.의 가. (3)항의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2) 피고 ○○시멘트 주식회사, 같은 ○○종합금융 주식회사, 같은 ○○리스 주식회사, 같은 ○○기업리스 주식회사, 같은 ○○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위 1.의 가.

(1) 내지 (3)항 기재 각 전세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분리양도 시 전세권의 소멸 여부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②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전세권에 관하여 경료된 가압류부기등기의 효력(무효)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인은 유효하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

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마저 소멸된 이상 그 전세권에 관하여 가압류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③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전세권의 가압류권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협력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전세권을 가압류하여 부기등기를 경료한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기권리자인 전세권설정자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공1999상, 436)

㊦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해지를 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9. 6. 16. 접수 제12347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989. 11. 27.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성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②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기 위한 요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 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 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

③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등 채권의 발생과 각 그 소멸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뿐만 아니라 훼손된 건물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등도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의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임대인으로서의 그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판결)

아.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의 의

대위의 의의에 관하여는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797면 참조)에서 다루었다.

(2)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³⁴²⁾

㉡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인 원고가 순차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원인무효등기인 피고명의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바,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그 말소등기에 의하여만 등기상태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등기법상 불가능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³⁴³⁾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³⁴⁴⁾

㉣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 등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³⁴⁵⁾

34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343)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

34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345)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³⁴⁶⁾

(3) 청구취지 기재례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갑에게
 (1) 피고 을은 ○○지방법원 2014. 4. 9. 접수 제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병은 같은 법원 2014. 5. 10. 접수 제1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정은 같은 법원 2014. 10. 20. 접수 제2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갑은 원고에게 2014.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위 기재례는 원고가 피고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 을이 정당한 원인 없이(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또는 피고 갑이 이중매매 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을 앞으로 등기를 마친 후 피고 병, 피고 정에게 순차 등기이전이 된 경우,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예이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방○○는 피고 한○○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등기소 1999. 8. 31. 접수 제10210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한○○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3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46)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183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1. 별지 상속지분표 제①항 기재 소외인들에게, 같은 지분표 제②항 기재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 가. (1) 피고 홍○빈은 별지 토지목록 제1, 제2기재 토지에 대한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 (2) 피고 홍○철은 같은 토지에 대한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농업협동조합은 별지 토지목록 제3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2. 5. 23. 접수 제77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위에 의한)

원고에게, 피고 정○○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2,264분의 350,278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8. 9. 16. 접수 제145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24,430분의 223,537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8. 9. 15. 접수 제6072, 60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김○○, 한○○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52,264분의 175,139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1. 5. 7. 접수 제10,8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24,430분의 223,537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1. 5. 8. 접수 제4614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부동산 목록

1. ○○ ○○군 ○○면 ○○리 산 47 임야 3522,264㎡
2. ○○ ○○읍 ○○리 산 137-1 임야 524,430㎡. 끝.

[참조판례] ①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 그것이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지 여부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면, 설사 그것이 종중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것이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받은 위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계쟁부동산의 사정명의자인 갑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장남인 을이 이미 사망하였고 병이 을의 차남이었다면, 병은 을의 법정상속분 중 그에 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을의 순위에 갈음하여 갑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부동산의 소유권 중 위와 같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병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위원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적어도 병이 상속받은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347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대위에 의한)

(주위적 청구취지)

1. 소외 임일남, 오영남에게, 군산시 수송동 42-5 답 1,6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 가. 피고 김일수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1. 10. 24. 접수 제372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피고 정숙영은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372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다. 피고 유선영은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372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라. 피고 백석영은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372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마. 피고 이웅영은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372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바. 피고 정환영은 같은 법원 1991. 11. 9. 접수 제38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김일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0. 9.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허가 없이 전전매매된 경우, 최종 매수인이 최초의 매도인에게 직접 허가신청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전 매매되고 그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매매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그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전매매한 경우, 그 각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는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거래허가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 없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자인 을, 병 을 거쳐 정에게 전전매매한 경우, 그 각각의 매매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고, 각 매수인이 각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이 이들 을 순차 대위하여 갑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선택적 병합)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종옥은 ○○지방법원 ○○등기소 1990. 7. 3. 접수 제5242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종덕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241호로 마쳐진 각 지분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6. 1. 9. 접수 제78호로 마쳐진 각 지분이전등기의, 피고 봉두원은 같은 등기소 1985. 4. 23. 접수 제4672호로 마쳐진 각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김종옥은 원고 진수화에게 경북 ○○군 ○○면 ○○리 산 70-1 임야 4,824㎡에 관하여 1991. 12. 1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목 록

1. ○○ ○○군 ○○면 ○○리 산 70 임야 3,631㎡
2. ○○ ○○군 ○○면 ○○리 산 70-1 임야 4,824㎡. 끝.

[참조판례] ①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입증하여야 할 사항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한지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는 그 채권의 존재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입증하면 족한 것이며, 채권의 발생원인사실 또는 그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② 확인서 발급신청인 자신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가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은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사망 후 그 후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토지 소재지 이, 동에 거주하는 3인 이상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일정 기간
 공고를 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해당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원인 서류로 갈음
 하여 사실상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것으로, 같은 법에 의한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터잡아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경료되는 것이므로, 그 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한 3인의 보증인들의 보증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같은 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이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같은 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
 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 자신은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인 자신이 같은 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같은 법에 의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3936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원인무효, 대위에 의한)

소외 ○○농업협동조합에게, (가) 피고 김○○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의
 9738분의 4959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8. 3. 21. 접수 제1413호로
 마쳐진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2. 3. 16. 접수 제2533호로 마쳐진 소유권일부이전등
 기, 같은 목록 기재 제2, 4, 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7. 18. 접수 제565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강○○은 같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1. 8. 6. 접수 제37929호로 마쳐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기재 제1, 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7. 18. 접수 제56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 및 같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6. 11. 6. 접수 제76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정○○은 같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6. 30. 접수 제121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이○○은
 같은 목록 기재 제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4. 20. 접수 제88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선행화해와 모순·저촉되는 내용의 후행화해가 성립한 경우, 선행화해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갑과 을등 사이에 제1화해가 성립한 후에 갑과 을 사이에 다시 제1화해와 모순·저촉되는 제2화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제2화해
 에 의하여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고 나아가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을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7.29. 선고 92다2513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원인무효, 대위에 의한)

1. 원고에게,
 - 가. 피고 안기수는 ○○시 ○○구 ○○동 186-2 유지 6,790㎡에 대하여 ○○지방법원 1987. 4. 18. 접수 제201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나. 피고 문부영은 위 토지 중
 - (1) 6,790분의 2,314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87. 4. 27. 접수 제21366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2) 6,790분의 3,471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87. 6. 22. 접수 제30980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다. 피고 조용길은 위 토지 중
 - (1) 6,790분의 5,785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87. 9. 30. 접수 제48153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2) 6,790분의 1,005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87. 9. 30. 접수 제48155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라. 피고 김철호는 위 토지 중 6,790분의 1,005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87. 9. 30. 접수 제48154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마. 피고 진용섭은 위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90. 1. 20. 접수 제3556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바. 피고 양수진, 하명순, 안송일, 백영균, 박기환, 이정은은 위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90. 3. 5. 접수 제133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사. 피고 한강산업개발주식회사는 위 토지 중 피고 이정은 지분(2,054분의 854)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90. 4. 12. 접수 제252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아. 피고 윤대식은 위 토지에 대하여 1943.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은 선의의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2915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가. 피고 김○수, 김○춘, 김○자, 김○금, 김○춘, 김○문, 김○남에게

(1) 피고 주식회사 ○○주택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2. 17.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91325호 내지 제91329호 제91331호 내지 제91336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2) 피고 이○군은 같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1.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8738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강○환은 전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9. 7. 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8388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4) 피고 김○식은 같은 목록 2,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8. 3.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 28629, 제28632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5) 피고 장○수는 같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 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328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 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667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6) 피고 이○현은 같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6. 8. 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4707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7) 피고 김○식은 같은 목록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3.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63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8) 피고 최○순은 같은 목록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6. 3. 같은 등기소 접수 제5830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9) 피고 박○기는 같은 목록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3.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 28631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10) 피고 김○희는 같은 목록 10, 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3.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633호, 제2863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김○수, 김○춘, 김○자, 김○금, 김○순, 김○문, 김○남은 소외 주식회사 ○○기업에게,

(1) 별지 제1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1.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2) 별지 제1목록 4항 기재 부동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9.9. 12. 신탁해지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동일 건물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동일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부상의 건물의 구조 및 지번의 표시 등에 있어서 실제와 다른 점이 있으나 그 건물을 표상함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1678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대위에 의한)

피고 김상면은 피고 이숙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의 각 부동산의 각 6/14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6. 6. 4. 접수 제520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이숙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의 각 부동산의 각 6/14지분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5. 3. 15. 접수 제350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참조판례] 원고가 청구취지에서는 피고를 상대로 그 명의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직접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 사실로 대위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하고 있는 경우, 위 주장의 취지를 직접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만 보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석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539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피고는 소외 김○○에게 ○○ ○○군 ○○면 ○○리 산 21 임야 28,760㎡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4. 6. 15. 접수 제10459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해지 없이 수탁자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②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자. 토지의 일부만에 관하여 말소등기사유가 있는 경우

(1) 개 설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토지 전부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등기는 정당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된다.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³⁴⁷⁾ 따라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된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이 원인무효임을 주장할 때에는 그 부분만의 말소를 허용하면 되고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부분까지 합친 전필지에 대한 등기를 모두 말소시킬 필요는 없다.³⁴⁸⁾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³⁴⁹⁾ 한편, 판례는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고 한다.³⁵⁰⁾³⁵¹⁾ 그런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 법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약정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해석하기 어렵게 되었다.

347)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348) 대법원 1965. 6. 22. 선고 65다778 판결

349)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350) 분할등기 아니 된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다1867 판결)

351) 미분할등기된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인지의 여부 :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동 명의신탁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1819 판결)

(2) 청구취지 기재례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소구함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목적부동산과 말소대상이 되는 등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등기의 표시는 그 등기의 관할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만으로써 족하고 그밖에 등기원인, 내용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말소등기를 실행함에는 법원의 판결자체가 등기원인으로 되기 때문이다. 다만, 후발적 실효사유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실효됨을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할 경우, 예컨대 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소멸청구에 의한 전세권·지상권의 소멸, 임대차계약 해지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설정계약 해지에 의한 근저당권의 소멸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소등기의 원인으로 기재한다.

한 필의 토지를 두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려면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판결에 첨부된 목록으로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이러한 절차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토지가 합병된 것이어서 구 지번표시에 의하여 각 토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구 지번을 표시하고 등기할 수 없는 것이니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는 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등기를 할 수 없다.³⁵²⁾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50㎡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5. 15. 접수 제3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 ○○동 123-4 임야 62,81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061㎡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4. 12. 22. 접수 제356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352)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결

입증정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로 실효)에 의한 등기가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 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거가 있는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보증서상의 매매일자가 매도인의 사망 이후이고 보증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상속인 중 일부 명의로 된 매도증서만을 보고 보증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 그 보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허위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②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계속의 판단기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점유의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당해 토지와 주위의 다른 토지들을 매수한 후 합병하여 하나의 토지로 만들었고 주위에 접담장을 축조하여 사용한 경우, 당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본 사례).(대법원 1997.4.25. 선고 97다483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1. 원고에게,

가. 피고 정막화, 장일순, 장일남, 장이남은 ○○시 ○○면 ○○리 산 2-1 임야 56,991㎡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7, 40, 39, 34, 35, 36, 37, 3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5,168㎡에 대한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양미숙, 장동일, 장동순, 장동이, 장동숙은 같은 부동산 중 같은 부분에 대한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별로 ○○지방법원 ○○지원 1981. 8. 21. 접수 제316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 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상속인들도 포함되는지 여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 제10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규정과 제1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 발급신청서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사실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② 토지의 일부씩을 특정 매수한 매수인들이 편의상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공동 매수한 것으로

작성한 보증서의 허위성 여부

1필지의 토지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수한 매수인들이 그 전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편의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를 공동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의 일부에 관한 보증서가 허위임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보증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③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증인 중 일부가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 추정력의 반복 여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4.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상의 보증인들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④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 매매 일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일 이후이거나 매수명의인의출생일 이전인 경우, 등기추정력의 반복 여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4.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실효)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 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 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보증서상의 매수명의인들이 실제 매수인들의 상속인이라면 그 매수일 당시 명의수탁자인 명의인의 1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거나 매수명의자들이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9.5. 선고 97다19564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1. 원고에게, ○○시 ○○군 ○○면 ○○리 산 53 입야 40,150㎡ 중 별지 도면 표시 62, 63, 64, 65, 66, 67, 68, 69, 70, 6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3,576㎡에 관하여,
가. 피고 김○○는 ○○지방법원 ○○등기소 1973. 10. 8. 접수 제32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문○○는 ○○지방법원 ○○등기소 1979. 6. 13. 접수 제314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계속의 판단 기준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며, 점유의 계속은 추정되는 것이고, 임야를 매수하여 그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 전부에 대한 인도와 점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512 판결)

㊦ 분할등기등 청구(예비적 병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355-1 답 580㎡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부분 토지 633㎡에 관하여 ○○지방법원 1959. 2. 13. 접수 제5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355-1 답 580㎡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부분 토지 633㎡에 관하여 1969. 2. 1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인도받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토지의 매수인이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해 오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그 말소를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하는 것은 위 양 청구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을 위한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청구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원인없이 경료된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순차로 경료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소송의 적부
원인없이 경료된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하여 순차로 경료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승소의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이 된다거나 종국적인 권리의 실현을 가져다 줄 수 없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④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일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의 여부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관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 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 ○○동 산 40의 10 임야 14,88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447㎡ (1993. 4. 10. 합병되기 전의 같은 동 산 40의 10 임야 4,126㎡, 같은 동 산 38의 29 임야 8,163㎡, 같은 동 산 40의 15 임야 188㎡ 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8. 1. 20. 접수 제22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1.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비율에 따라 강원 ○○군 ○○면 ○○리 289 전 8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718㎡에 관하여,
가. 피고 김일수는 ○○지방법원 1984. 12. 5. 접수 제2382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강일구는 ○○지방법원 1991. 1. 10. 접수 제5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김이수는 1966. 4. 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원고가 점유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보존등기명의자인 피고 갑이 한 타주점유항변의 효과가 이전등기명의자인 피고 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본 사례

원고가 점유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위 취득시효완성에 관한 청구원인사실은 보존등기명의자인 피고 갑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이전등기명의자인 피고 을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피고 갑만이 타주점유

항변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의 위 항변의 효과는 위 피고와 적극적으로 저촉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피고 을에 대하여도 미친다.(춘천지법 1991. 10. 30. 선고 91가단400 판결 : 항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1. 원고들에게,
 - 가. 피고 김영일은 서울 ○○구 ○○동 4가 12 대 561.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6.4㎡와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7㎡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4. 12. 3. 접수 제534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피고 이영이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6. 24. 접수 제368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1. ○○시 ○○동 12 답 302㎡ 및 ○○시 ○○동 34 답 1196㎡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13, 1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㉔부분 233㎡에 관하여,
 - 가. 피고 김영일은 피고 이영이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85. 7. 20. 접수 제266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이영이는 원고에게 1985.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김영일은 원고에게 409,716,884원 및 그중 107,210,534원에 대하여는 2009. 4. 17.부터, 302,506,350원에 대하여는 2010. 1. 29.부터 각 2013. 2.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차. 폐쇄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 말소 청구

(1) 개 설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고,³⁵³⁾ 그 회복절차에 관해서 법률상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³⁵⁴⁾ 회복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폐쇄등기용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도 할 수 없다.³⁵⁵⁾³⁵⁶⁾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33조가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등기 실무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구제가 곤란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등기가 원인 없이 순차 이전된 상태에서 현재 효력이 있다고 보이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와 그로부터 원인 없이 이전된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게 되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지는 못하였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아 있다는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없이 이전된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위와 같은 이전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건에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등기 중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모두 말소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말소등기청구의 대상이 된 위 등기를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다음 그 등기에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말소등기를

353) 폐쇄된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223 판결)

354)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해서 법률상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은 이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1089 판결)

355)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회복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폐쇄등기용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389 판결)

356)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새로운 등기기록에는 기록되지 못한 채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게 되는 등기(이하 ‘폐쇄등기’라 한다)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등 참조)

실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에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을 유추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폐쇄등기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등기관은 당사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등기기록에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등기도 함께 옮겨 기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³⁵⁷⁾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분할 후 새로운 등기기록을 사용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³⁵⁸⁾

(2) 청구취지 기재례

☐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 청구

1. 주식회사 ○○(100000-00000000)에 대하여,
 - (1) ○남 ○○시 ○○동 12 대 6,552.4㎡ 중, (가) 피고 김영일은 2,943.22/6,552.4 지분에 관하여, 피고 장영이는 1,788.42/6,552.4 지분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지원 1993. 7. 29. 접수 제11957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1991. 6. 29. 접수 제123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 주식회사는 위 각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 (2) ○남 ○○시 ○○면 ○○리 34 대 19,787.5㎡ 중, (가) 피고 김영일은 1,679.87/19,78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장영이는 1,679.87/19,787.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3. 7. 29. 접수 제 11957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1991. 6. 29. 접수 제123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조영오는 위 각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와 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분할 후 새로운 등기기록을 사용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57)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358)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새로운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채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게 되는 등기(이하 ‘폐쇄등기’라 한다)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록할 수도 없으므로,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33조가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등기실무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구제가 곤란하게 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상태에서 현재 효력이 있다고 보이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말소된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게 되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지는 못하였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는 말소회복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아 있다는 이유로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 및 그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에 관하여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사건에서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한편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등기 중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모두 말소되면, 등기관은 새로운 등기기록에 등기사항을 처음 옮겨 기록할 당시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 및 그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등기도 함께 옮겨 기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등기법 제32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들 등기를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다음 그 등기에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말소회복등기 등을 실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 및 그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분할 후 새로운 등기기록을 사용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1. 주식회사 ○○(100000-0000000)에 대하여,
 - 가. 피고 ○○○ 주식회사는 ○남 ○○시 ○○동 12 대 6,552.4㎡ 중, 4,731.64/6,552.4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7. 1. 12. 접수 제9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 나. ○남 ○○시 ○○면 ○○리 34 대 19,787.5㎡ 중 3,359.74/19,78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지방법원 ○○지원 2007. 1. 12. 접수 제9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신탁 주식회사는 ○○지방법원 ○○지원 2007. 10. 10. 접수 제269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5㎡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3. 17. 접수 제128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0. 4. 9. 접수 제178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김영삼은 별지 목록 기재 제3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2㎡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3. 17. 접수 제128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0. 4. 9. 접수 제178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4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3. 17. 접수 제128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0. 4. 9. 접수 제178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정영일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1. 8. 11. 접수 제347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최종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중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원고에게, 피고 한영국, 같은 한영철, 같은 한영팔은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의 각 2/10지분, 피고 한순옥, 같은 한순명, 같은 한순일, 같은 한순영은 같은 부동산의 각 1/10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60. 11. 23. 접수 제1201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한순영은 별지 목록 제2, 3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6. 12. 14. 접수 제3660호로써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신용협동조합은 별지 목록 제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 7. 27. 접수 제22104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예고등기의 촉탁을 하지도 않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원심이나 제1심조치의 적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원인으로 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에서 법원이 부동산등기법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예고등기의 촉탁을 하지도 않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하였다면 이는 위 법규에 따라 수소법원이 하여야 할 절차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2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피고 ○○군은 별지 제1목록 각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0. 12. 19.자 접수 제12257호(같은 목록 ①토지), 제12240호(같은 목록 ②토지), 제12256호(같은 목록 ③토지), 제12255호(같은 목록 ④토지), 제12256호(같은 목록 ⑤, ⑥토지), 제12257호(같은 목록 ⑦토지)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공업주식회사는 위 같은 목록 ① 내지 ⑦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5. 12. 31. 접수 제15801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원고에게, 피고 서○예, 박○향, 박○창, 박○성, 박○순(이상 땅 박○수의 소송수계인)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65. 6. 30. 접수 제47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김○덕은 같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2. 5. 1. 접수 제106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2. 2.17. ○○지방법원 인제등기소 접수 제628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9. 3.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폐쇄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폐쇄등기부상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을이 원인무효를 이유로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수소법원이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보존등기

에 관하여 예고등기를 촉탁하여 그 예고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에 따라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신등기용지에 이기되므로 올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3835, 94다3384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청구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애, 같은 이○선, 같은 이○영, 같은 이○득, 같은 이○각, 같은 이○성, 같은 이○창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69. 7. 1. 접수 제219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같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68. 7. 4. 접수 제20858호로 말소한 ○○지방법원 1958. 1. 9. 접수 제180호, 1958.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이○애, 같은 이○선, 같은 이○영, 같은 이○득, 같은 이○각, 같은 이○성, 같은 이○창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장○현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86650분의 1530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1969. 3. 13. 접수 제6948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같은 장○준은 위 부동산 중 86650분의 98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69. 3. 3. 접수 제5864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카. 사위(詐僞)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

(1) 개 설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위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³⁵⁹⁾

359)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그곳으로 송달케 한 소위 사위판결은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제기 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³⁶⁰⁾³⁶¹⁾ 따라서 그 상대방은 위 사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위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2) 청구취지 기재례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4. 10. 30. 접수 제28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백○○ 명의의 3분의 1 지분 및 소외 백○○ 명의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1985. 2. 11. 접수 제781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이른바 사위판결의 기판력 유무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이른바 사위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상소기간은

360) 허위주소로 송달하여 얻은 사위판결이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 : 종국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형식적확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위 사위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판결)

361)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소한 사위판결과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그 곳으로 송달케 한 소위 사위판결은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제기 기간은 진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형식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기판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한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1981.3.24. 선고 80다2220 판결)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기판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위 '①'항의 사위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유무 및 그 상대방이 별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 '①'항의 사위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 말소될 처지에 있고, 또 그 상대방이 사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별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인 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3863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원고에게,

- 가. 피고 박○○은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77. 3. 15. 접수 제13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김○○, 조○○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7. 7. 1. 접수 제35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남○○은 같은 목록 (2)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8. 2. 28. 접수 제11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사위판결과 기판력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소함으로써 판결정본을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있기까지는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될 수 없는 것인 만큼 그 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판결이 외형상 확정되었다 해서 그 집행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1350 판결)

타. 기타 등기에 관한 말소 청구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4. 9. 13. 접수 제7231호로, 같은 목록 제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 9. 15. 접수 제7248호로, 같은 목록 제5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 9. 18. 접수 제7309호로 각 마친, 각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하는 표시경정등기가 마쳐졌으나, 신청 당시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였고 경정 결과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경정등기의 효력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으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경정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

☐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군 ○○읍 ○○리 산 2-1 임야 1정 3단 2무보, 같은 리 산 130 임야 5정 3단 8무보, 같은 읍 ○○리 산 37 임야 4단 6무보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4. 12. 4. 접수 제288호로 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같은법원 2015. 3. 21. 접수 제9593호로 된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사위의 방법으로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명의자가 소유자와 다르게 된 경우, 소유자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가부
현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터잡아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하여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각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권의 정당한 행사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있던 소유자라면 허위로 동일인 증명을 얻어 피고명의로 표시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 편제에 따라 현재의 신등기부예의 이기절차로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당연무효의 채납처분에 기한 부동산압류등기의 민사소송에 의한 말소청구의 가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룰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행정처분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채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 등기명의인주소경정등기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지원 2014. 4. 27. 접수 제8625호로 한, 순위번호 1번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부기1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군 ○○읍 ○○리 산 64 임야 61,785㎡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2. 29. 접수 제6086호로 한 ○○김씨○○공○○파중회의 2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절차상 무효인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의 효력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종중과 별개의 종중인 피고종중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서류에 기하여 피고종중 명의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를 한 경우, 가사 진정한 소유권자가 소유권회복을 위하여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의 이전등기말소나 이전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명의자를 경정하는 방법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소유권 등 권리관계 변동의 효과가 생길 수는 없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자 명의로 표시변경등기가 되었다 한들 그 등기가 절차상 무효인 이상 실체관계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이다.(서울고법 1991.3.15. 선고 90나30717 판결)

☐ 압류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1. 18. 접수 제4249호로,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소 같은 달 19. 접수 제2078호로 경료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 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②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③ 국세우선권의 내용 및 국세(당해세 포함)채권의 추급권 유무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는 없고,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④ 위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그 재산상속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과된 상속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바, 신탁대상 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 압류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4. 2. 3. 접수 제1234호로 마친 국세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순위보전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한 자의 가등기 후에 경료된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말소청구의 적부

원고가 제3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방편으로 가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채권 채무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순위보전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한 것이므로 가등기 후에 한 피고들의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한다는 것인바, 등기공무원의 처분이나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의절차에서의 법원의 재판은 원·피고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하여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력을 가지는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8657 판결)

[참조판례]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계속 중에 당해 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재차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등기말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유지되는지 여부

어떤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계속 중에 당해 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재차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등기말소소송은 그대로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대법원 1992.1.17. 선고 91다35960 판결)